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8호

BUDGET AND POLICY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8호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8호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 예산과 입법과제

2009. 10

전용수 · 유인규 · 강상규 · 김성은
변재연 · 이형진 · 한정수



국회예산정책처

발 간 사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산업 부문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집중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성장동력은 범부처적인 참여를 통하여 2009년 1월에 3대 분야 17개로 선정한 뒤, 5월에 세부과제 200개를 발표하고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이제 그 모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체계적으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현재까지 제시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제 I 장은 총론에 해당하는 장으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과 입법과제를 요약하였습니다. 제 II 장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으며, 제 III 장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제 IV 장은 신성장동력 분야별 추진과제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V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정책제언을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수행되었던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과 현재 주요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첨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9년 10월 20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신 해 룡

목 차

I. 총론과 요약 / 1

1. 문제제기	1
2. 신성장동력의 개요	2
3.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4
4. 정책 제언	8
가. 예산과제	8
나. 입법과제	9
다. 기타 고려할 사항	10

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 11

1. 신성장동력 선정 현황	11
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수립 경과	11
나. 신성장동력 및 추진과제 선정 현황	11
2. 추진전략	15
가.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본방향	15
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16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18
가. 추진체계	18
나. 추진일정	19
다. 투자 규모	20
4.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현황	22

I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 24

1. 효율적 재원확보 및 투자 전략의 수립	24
가. 투자재원 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필요	24
나. 민간의 투자규모 제시 및 점검 필요	25
2. 적극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	27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보완	29
가.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29
나. 과거 유사 정책의 수행경험 활용 필요	32
다.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계획의 구체화 필요	33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35
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35
나. 국제규정을 고려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36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 / 37

1. 녹색기술산업 분야	37
가. 예산 및 추진과제 현황	37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38
다.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증연구 확대 필요	39
라. 고도 물처리 관련 인증제도 도입 등의 근거 마련 필요	42
마. 그린수송시스템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44
바. U-City 시범사업 투자계획 및 자가통신망 관련 검토	45
2. 첨단융합산업 분야	49
가. 예산 및 추진과제 현황	49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50
다. 고부가식품산업 관련 투자의 효율화 방안	51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56
가. 추진과제 현황.....	56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57
다. 글로벌 헬스케어 및 글로벌 교육서비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58
라.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검토.....	60
마. 콘텐츠·SW 관련 법·제도 등 환경정비 필요.....	63
바. MICE·관광 관련 중장기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64

V. 결 론 / 66

[참고자료 1]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국내외 계획.....	70
1. 타 계획과 신성장동력의 관계.....	70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70
나. 녹색 뉴딜.....	73
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76
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77
2. 과거 우리나라의 유사 사업.....	80
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 확보를 위한 사업 현황.....	80
나.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81
다.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82
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84
마. 과거 유사사업과 신성장동력의 비교.....	87
3.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89
가. 미국.....	89
나. 일본.....	91
다. 중국.....	94
라. 유럽(EU).....	95

[참고자료 2] 신성장동력별 추진과제 현황	99
1. 신재생에너지	99
2. 탄소저감에너지	101
3. 고도 물처리	102
4. LED 응용	104
5. 그린수송시스템	106
6. 첨단그린도시	108
7. 방송통신융합산업	110
8. IT융합시스템	112
9. 로봇 응용	113
10. 신소재·나노융합	114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15
12. 고부가 식품산업	116
13. 글로벌 헬스케어	118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20
15. 녹색금융	122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24
17. MICE·관광	126
참 고 문 헌	127
작성자 명단	130

표 목 차

[표 I-1]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3
[표 I-2] 신성장동력 관련 국회 계류 법률안 현황	6
[표 I-3] 신성장동력 예산 관련 정책 제언	8
[표 I-4] 신성장동력 입법과제 관련 정책 제언	9
[표 II-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200대 추진과제 선정 결과	12
[표 II-2]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분류	13
[표 II-3]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의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선정 현황...	13
[표 II-4] 인력양성 계획의 추진과제	14
[표 II-5] 인력양성 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추진과제	14
[표 II-6] 성장동력화 시기 및 육성 정책	15
[표 II-7]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16
[표 II-8]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완료시기	19
[표 II-9] 신성장동력별 투자소요	20
[표 II-10] 17개 신성장동력별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22
[표 III-1] 신성장동력 관련 제도개선 대상 현황	27
[표 III-2] 고부가서비스산업 관련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28
[표 III-3] 녹색성장 관련 법안의 추진위원회 구성 비교	30
[표 III-4] 20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특장평가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34
[표 IV-1]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추진과제 현황	37
[표 IV-2]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38
[표 IV-3]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39

[표 IV-4] 9대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	40
[표 IV-5] 지식경제부의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현황	40
[표 IV-6]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별 투자계획	41
[표 IV-7] 고도물처리산업 투자계획: 2009-2013년간	42
[표 IV-8]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예산 현황	44
[표 IV-9] 온라인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의 연도별 소요예산	45
[표 IV-10] U-City 사업 관련 투자계획	46
[표 IV-11] 첨단융합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49
[표 IV-12]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50
[표 IV-13]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51
[표 IV-14] 고부가 식품산업 관련 투자계획	52
[표 IV-15]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의 생산액 및 종사자수 비교	52
[표 IV-16] 식품가공산업 원료의 국내산과 외국산 비중	53
[표 IV-17] 연도별 소금 수급현황	55
[표 IV-18]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56
[표 IV-19]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57
[표 IV-20]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	58
[표 IV-21] 녹색산업 금융지원의 정책 방향	60
[표 A-1]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체계	71
[표 A-2]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전략 및 정책방향	72
[표 A-3]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72
[표 A-4] 녹색 뉴딜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	73
[표 A-5] 녹색 뉴딜 사업 재정소요	75
[표 A-6]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관계	76
[표 A-7]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분야별 주요 핵심과제	78
[표 A-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관계	79
[표 A-9] 신성장동력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	80

[표 A-10] G7 프로젝트의 개발과제 현황	81
[표 A-11]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현황	82
[표 A-12]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단 현황	83
[표 A-1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주관부처	84
[표 A-1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예산 현황	86
[표 A-15] G7,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의 비교	88
[표 A-16] 미국의 그린카, 그린홈 및 스마트그리드 정책목표	90
[표 A-17] 미국 「경기부양법」의 8개 지원 분야.....	91
[표 A-18] 일본의 이노베이션 25의 5대 목표 및 8대 전략분야.....	92
[표 A-19] 일본의 2009년 과학기술정책 주요과제	94
[표 A-20] 중국의 금융위기 대응 주요 투자분야.....	95
[표 A-21] EU의 경쟁력·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지원 계획	96
[표 A-22] EU의 청정기술 R&D 관련 주요 계획(Initiative)	97
[표 A-23] EU의 6개 분야 육성전략	98

그림 목차

[그림 I-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관계	2
[그림 I-2] 신성장동력 재정투자 계획의 변화	4
[그림 I-3] 녹색기술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5
[그림 II-1] 신성장동력 추진체계	18
[그림 II-2]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규모	21
[그림 II-3] 2010년도 예산안의 신성장동력별 비중	23
[그림 III-1] 신성장동력 관련 R&D비용 세액공제 개선안	25
[그림 III-2]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의 구성 현황	31
[그림 IV-1] U-City 사업 관련 추진전략 및 로드맵	46
[그림 A-1] 녹색성장의 개념	70
[그림 A-2] 녹색 뉴딜 사업과 신성장동력의 관계	74
[그림 A-3]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녹색기술 R&D의 관계	77
[그림 A-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체계	85

I. 총론과 요약

1.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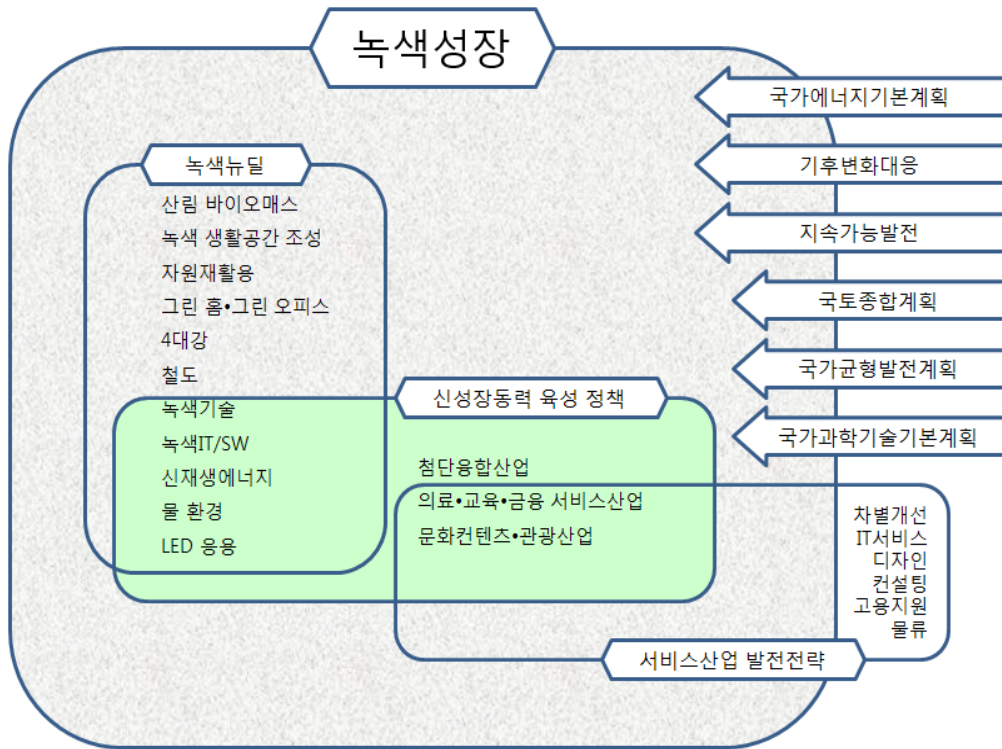
-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및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의 구현을 위하여 신성장동력 확보,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천명
 -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제시
 - 2009년 1월에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2009년 5월에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
 - 2009년 7월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신성장동력을 추진중

- 이 보고서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국회가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안 및 법률안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작성되었음
 -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따라 새로운 성장 산업의 발굴·육성이 이루어지고,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의 점검이 필요
 - 신성장동력 추진체계, 타 계획과의 관계 및 자원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보완 방향 제시
 - 추진과제별 사업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등을 점검하였음

2. 신성장동력의 개요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은 ‘저탄소 녹색 성장’과 연관된 계획으로 추진 중임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 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포괄하는 최상위 국가계획임
 -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등은 서로 중첩·보완 관계임([그림 I-1] 참조)

[그림 I-1]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관계



- 미래기획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2009년 1월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음([표 I-1] 참조)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구성된 TF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추진과제와 기능별 대책을 수행 중임

[표 I-1] 신성장동력 목록 및 선정 사유

분야	신성장동력	선정 사유
녹색 기술 산업	1.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해결 능력 및 미래 거대 시장잠재력 등
	2. 탄소저감에너지	기후변화·자원위기 대응, 우리나라 잠재력 유망
	3. 고도 물처리	녹색성장 연관성 및 미래 시장 유망 등
	4. LED 응용	에너지 절약 및 시장 잠재력 등
	5. 그린수송시스템	전후방 산업파급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6. 첨단그린도시	삶의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
첨단 융합 산업	7. 방송통신융합산업	국내 IT경쟁력 및 신시장 창출 등
	8. IT융합시스템	주력산업(조선 등)의 경쟁력을 IT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확보
	9. 로봇 응용	전후방 산업효과 및 세계 시장 유망 등
	10. 신소재·나노융합	타산업 필수기반산업 및 신산업 창출 등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세계 유망시장 및 신산업 창출 등
	12. 고부가 식품산업	미래 식량자원문제 해결 및 고부가화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15. 녹색 금융	타 산업 필수 기반산업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16. 콘텐츠·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효과 및 세계시장 유망 등
	17. MICE·관광	일자리 창출효과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등

자료: 기획재정부 등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특별보고, 2009. 1.

3. 신성장동력 관련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 신성장동력 관련 재정 투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약 17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음
 - 2009년 1월에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할 당시에는 투자규모를 밝히지 않았으나, 2009년 5월에는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소요를 부처 요구안 기준 24.5조원으로 발표하였음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약 17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¹⁾되었음([그림 I-2] 참조)

[그림 I-2] 신성장동력 재정투자 계획의 변화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	녹색성장 5개년계획
발표 시기	2009. 1	2009. 5	2009. 7
주요 내용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200개 추진과제 확정	녹색성장에 신성장동력 포함
예산 규모	-	24.5조원 (투자소요)	녹색성장 관련 총 투자(107.4조원) 중 약 17조원

주: 기획재정부는 17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자료: 1. 기획재정부 등,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특별보고, 2009. 1.
 2.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3.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009. 7.

1)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3% 수준의 증가율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근거로 총 투자계획을 17조원을 산출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와 관련된 사업의 2009년도 예산 총액은 2조 3,814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22.5% 증가한 2조 9,171억원임([그림 1-3] 참조)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개정 대상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등 17개로 조사됨

[그림 1-3] 녹색기술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분 야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
신성장동력 (17개)	1. 신재생에너지 2. 탄소저감에너지 3. 고도 물처리 4. LED 응용 5. 그린수송시스템 6. 첨단그린도시	7. 방송통신융합산업 8. IT융합시스템 9. 로봇 응용 10. 신소재·나노융합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2. 고부가 식품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15. 녹색 금융 16. 콘텐츠·소프트웨어 17. MICE·관광
추진과제 (200개)	79개	62개	59개
투자소요 (24.5조원)	6조 7,000억원	12조 2,000억원	5조 5,000억원
투자계획	약 17조원		
2009 예산 (2조 3,814억원)	9,120억원	1조 805억원	3,889억원
2010 예산안 (2조 9,171억원)	1조 2,006억원	1조 2,641억원	4,524억원
제·개정 대상 법률 (17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수도법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수상레저안전법 - 교통체계효율화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총 7개)	- 방송법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방송통신사업법 - 향만법 - 염관리법 - 식품산업진흥법 (총 6개)	- 의료법 - 이리닝산업발전법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저작권법 (총 4개)

주: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음 금액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세부과제의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성장동력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등 21개임([표 I-2] 참조)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비롯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은 차세대성장동력을 비롯한 녹색성장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법안이므로 우선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음
 -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은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를 참조토록 함

[표 I-2] 신성장동력 관련 국회 계류 법률안 현황

소관 위원회	제·개정 법률안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009. 2. 27, 정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08. 11. 7, 김성곤의원 등 33인), (2009. 1. 14, 이인기의원 등 25인)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2008. 11. 25, 배은희의원 등 2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2, 이경재의원 등 11인), (2009. 7. 31, 이경재의원 등 14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09. 4. 17, 최문순의원 등 10인), (2008. 12. 19,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변재일의원 등 12인), (2009. 4. 2, 최문순의원 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30, 이윤석의원 등 28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5, 조배숙의원 등 29인), (2009. 9. 11, 장세환의원 등 21인)
지식경제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31, 정부)

소관 위원회	제·개정 법률안
보건복지가족 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9, 홍준표의원 외 171인), (2009. 7. 22, 손숙미의원 등 12인)
환경노동 위원회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2008. 12. 19, 박준선의원 등 10인), (2009. 4. 3, 조원진의원 등 10인), (2009. 7. 1, 강창일의원 등 11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정부)

주: 2009. 9. 23. 기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4. 정책 제언

가. 예산과제

-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효율적 재원확보 및 투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R&D 예산 확충 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목표의 제시 및 점검과 더불어,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표 1-3] 신성장동력 예산 관련 정책 제언

신성장동력	정책 제언	관련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결과가 시장창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실증연구 사업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p.39
그린수송시스템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전환하기 전에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p.44
첨단그린도시	운영비 보전 방법에 대한 수익모델 개발 완료 이후 시범사업 추진 필요	p.45
고부가 식품산업	식품산업에 대한 농림어업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및 HW 중심 투자계획의 재검토 필요	p.51

나. 입법과제

- 신성장동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육성을 고려한 대상 법률 및 제도의 발굴과 적극적인 제·개정 노력이 필요함
 - 신성장동력 관련 200대 추진과제 중 제도개선 과제는 35개이나,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대상 법·제도는 17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재정투자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인데, 제·개정 대상 법률이 4개에 불과함
 - 탄소배출권 제도 도입 등 신규 서비스 및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주관 TF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표 1-4] 신성장동력 입법과제 관련 정책 제언

신성장동력	정책 제언	관련내용
고도 물처리	품질인증,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과 관련된 법적 기반 정비 필요	p.42
첨단그린도시	통신 인프라의 중복 구축 등을 고려하여 자가통신망의 연계 활용 허용 여부에 대한 조정 필요	p.47
고부가 식품산업	천일염 관련 원산지 단속 규정 미비에 따른 유통질서 혼란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	p.54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기관 자본조달 경로 다양화 및 u-Health 활성화에 필요한 법률 개정 필요	p.58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p.60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환경과 금융지원 제도, 범정부적 지원 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적 환경 정비 필요	p.63
MICE·관광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며 관련 산업 지원의 법적 근거 및 육성방안 수립 필요	p.64

- 2) 신성장동력 200대 추진과제 중 제도개선에 해당하는 과제 35개 중 22개가 고부가 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함

다. 기타 고려할 사항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의 점검을 위해서는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특정평가를 통하여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시행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신성장동력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국제규정을 고려한 수출산업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주요 내용

1. 신성장동력 선정 현황

가.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수립 경과

- 대통령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제시 이후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 대통령이 2008년 광복절 경축사(2008. 8. 15)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
 -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기획단을 통하여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건의(2008. 9. 2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2009. 1. 13)에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확정
 - 200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신성장동력 세부추진계획과 기능별 대책(기술 전략지도, 인력양성계획, 중소기업 지원계획) 발표(2009. 5. 26)

나. 신성장동력 및 추진과제 선정 현황

-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하고 200개 추진과제를 발굴([표 II-1] 참조)
 - 녹색기술산업: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 첨단융합산업: 세계시장규모와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고,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 고부가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서비스업에 경제성을 보완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분야

[표 II-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및 200대 추진과제 선정 결과

분 야	신성장동력	주요 산출물 예시	추진과제수	주관부처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박막 태양전지, 연료전지발전시스템	19	지경부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 신형원전	8	지경부
	고도 물처리	수처리 플랜트	13	환경부·국토부
	LED 응용	LED 조명	8	지경부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WISE선박	16	지경부
	첨단그린도시	U-City	15	국토부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IPTV 서비스, 차세대 무선통신	15	방통위·지경부
	IT융합시스템	지능형 자동차, Flexible 디스플레이	10	지경부
	로봇 응용	소방방재 로봇	9	지경부
	신소재·나노융합	하이브리드카 경량화 복합소재	7	지경부·교과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줄기세포 치료제	14	복지부·지경부
	고부가 식품산업	천연식품 소스·첨가물	7	농식품부
고부가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11	복지부
	글로벌 교육서비스	외국인 유학생 유치	9	교과부
	녹색 금융	탄소배출권 거래소	12	금융위
	콘텐츠·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15	문화부·지경부
	MICE·관광	생태관광	12	문화부
합 계			200	

자료: 1. 기획재정부 등,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특별보고, 2009. 1.
2.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요약)」, 2009. 5.

- 연구개발(R&D)과 더불어 제도개선과 재정사업을 병행할 계획으로, 실질적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 신성장동력 분야에 정부 R&D 역량을 집중하고, 정부 R&D시스템 개선을 통한 투자 효율화 및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등과 더불어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등을 통한 조기 시장 창출 지원

- 연구개발(R&D), 재정사업(비 R&D), 인력양성,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산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환경 조성([표 II-2] 참조)

[표 II-2]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분류

연구개발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74	69	15	35	7	200

주: 기타는 계획수립, 국제협력, 민간투자, 인식 확산 등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17개 산업별 대책을 보완하기 위한 기능별 대책 수립

- 기술전략지도: 신성장동력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62개 Star Brand를 상정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1,197개 핵심기술 발굴([표 II-3] 참조)

[표 II-3]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의 스타브랜드, 전략품목 및 핵심기술 선정 현황

분 야	신성장동력	스타 브랜드	전략품목	핵심기술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6	25	121
	탄소저감에너지	3	8	38
	고도물처리	3	12	72
	LED응용	3	9	56
	그린수송시스템	3	9	97
	첨단그린도시	4	15	51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4	16	77
	IT융합시스템	6	26	178
	로봇응용	5	16	50
	신소재·나노융합	5	18	79
	바이오제약·의료기기	6	21	159
	고부가 식품	4	12	57
고부가서비스산업	콘텐츠·SW	10	35	162
합 계	13	62	222	1,197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2009. 5.

- 인력양성계획: 향후 10년간 70만명 규모의 핵심인력 양성을 목표로, 동력별 인력양성 사업에 더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고등교육특화사업 등 4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표 II-4] 참조)

[표 II-4] 인력양성 계획의 추진과제

	과제명	정책수단
핵심	고등교육에서 특화된 핵심·전문인력 양성	R&D/비R&D
기반	해외 교류 확대 및 공동연구를 통한 역량 제고	R&D/비R&D
기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직업(재)교육 실시	비R&D
기반	초·중등에서의 녹색 커리큘럼 등 개발	비R&D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2009. 5.

- 중소기업 지원방안: 2013년까지 ‘신성장 글로벌 중소기업³⁾ 300개 창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상용화, 투자촉진 등 전주기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며,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등 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표 II-5] 참조)

[표 II-5] 인력양성 계획 및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추진과제

	과제명	정책수단
핵심	중소기업형 신성장 유망기술 발굴 지원	R&D
핵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신설	R&D/재정
기반	신성장분야 중소기업 투자 촉진	재정
기반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확대	재정
기반	신성장분야 창업지원	재정

자료: 중소기업청,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2009. 5.

3) 세계시장 10위 이내, 수출 5천만불 이상의 중소기업

2. 추진전략

가. 신성장동력 발굴의 기본방향

- 각 부처별 제안 사업중 ‘시장성’, ‘파급효과’를 주요 선정기준으로 삼고, ‘녹색 성장 연관성’을 보조 척도로 활용하여 발굴
- 시장성속도에 따라 동력화 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표 II-6] 참조)
 - 단기(3~5년) 신성장동력: 시장성속도가 높아 단기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 분야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분야
 - 중기(5~8년 이내) 신성장동력: 핵심 원천기술 등 기술력이 있어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큰 분야 및 융합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장기(10년 내외) 신성장동력: 시장형성은 초기이나 미래 잠재력이 높은 분야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녹색성장의 미래 원동력이 되는 분야

[표 II-6] 성장동력화 시기 및 육성 정책

단기 (3~5년 성장동력화)	중기 (5~8년 성장동력화)	장기 (10년 내외 성장동력화)
· 신재생(조력·폐자원) · 방송통신융합산업 · IT융합시스템 · 글로벌 헬스케어 · MICE·관광 · 첨단 그린도시	· 신재생(태양·연료전지) · 고도 물처리 · 탄소저감에너지(원전플랜트) · 고부가 식품산업 · LED 응용 · 글로벌 교육서비스 · 녹색금융 · 콘텐츠·소프트웨어(SW)	· 신재생(해양바이오연료) · 탄소저감에너지(CO ₂ 회수활용) · 그린수송시스템 · 로봇 응용 · 신소재·나노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응용 기술개발 · 제도개선·투자환경 조성 등	· 핵심기술 선점 · 시장창출 등	· 기초원천기술 확보 · 인력양성 등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시장조성자 역할이 기대되는 분야에 집중
 - 이미 민간부문의 자체발전역량이 성숙된 분야(예: 메모리 반도체) 보다는 정부의 시장조성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획기적인 시장창출과 발전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
 - 해당분야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전략 마련([표 II-7] 참조)

[표 II-7] 신성장동력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

정 부	민 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수요·제도개선 등 초기시장 창출, 고위험 원천 기술개발 등 '민간부문의 투자환경 조성'에 역점	상용화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활성화, 신규 고용창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 필요

나. 신성장동력 육성 전략

- 시장창출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법령,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 산업간 융복합화, 환경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새로운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규 마련 및 정비
 - 시장기능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산업적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추진 및 세제개선을 통한 인센티브 신설·확대
-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공공수요 활용, 시범사업 추진 등 예산지원
 - 공공수요 활용 등으로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초기시장 창출
 - 신규사업의 시장검증 및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 표준화 및 인증체계 조기구축 등 제도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 지원
 - 신성장동력 제품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인증체계 마련·확산
 - 적극적인 시장조성을 위해 의무사용제 활용

-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산업성장을 주도해나갈 핵심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의 기술개발 주력
 - 성과중심으로 정부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의 R&D 투자 비중을 확대
 -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산업에 집중 투자

-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
 - 모방·추격형 전략에서 ‘창조·선도형 전략’으로 전환하여 핵심 기초원천 기술 확보
 - 미래 녹색성장의 기반이 되는 녹색 원천기술 및 IT·BT·NT 융합형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
 -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자원을 신성장동력 부문에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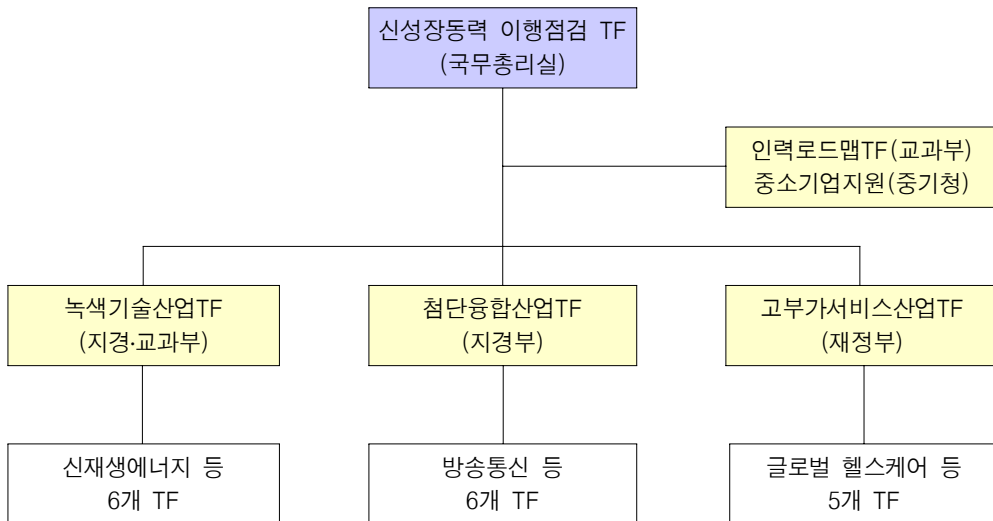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분야별 맞춤형 우수전문 인력 양성
 - 중·장기 인력양성 기반 확충 및 신규 인력 수요 발굴·지원(교과부)
 - 신성장동력 분야 선도 대학(원) 육성 및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 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지원, 석박사급 인력 양성 트랙(Track) 다양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분야별 단기 인력은 부처별 소관 기술개발 산업과 연계하여 양성

3. 추진체계, 일정 및 투자규모

가. 추진체계

- 17개 신성장동력의 200개 추진과제는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중심으로 수행하며, 단계별 추진 점검체계를 마련하여 이행실적을 점검([그림 II-1] 참조)
 - 신성장동력 범부처 TF: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분기별 이행·점검 TF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총괄 관리 및 추진 애로사항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
 - 3대 분야별 TF: 간사부처 담당 국장을 팀장으로 각 동력별 주관·협조부처 과장을 팀원으로 구성하며,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독려, 추진 애로사항 발굴 및 문제해결, 단년도 추진계획 수립
 - 17개 신성장동력별 민관 TF: 신성장동력별로 주관부처 중심으로 관련 기업체, 연구소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수시로 상황 점검 및 민간 의견수렴

[그림 II-1] 신성장동력 추진체계



주: ()는 각 TF별 간사부처임

- 지속적 제도개선 및 실적평가 추진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등을 정부부처 평가(특정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 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 부처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
 - 신성장동력 관련 규제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총리실 주도로 과감한 제도·규제개선 추진

나. 추진일정

- 녹색성장 추진 체계에 맞춰 진행하며, 예산안 수립시 반영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반영
 - 재정사업은 2010년도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추진과제별로 제시된 추진일정 및 완료시기에 맞추어 업무 추진
 - 2012년까지 48개 과제, 2013년에 127개 과제를 완료하여 2013년까지 175개 과제를 완료할 계획([표 II-8] 참조)
 - 향후 200개 과제의 추진·홍보시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임을 명시

[표 II-8]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의 정책수단별 완료시기

완료시기	연구개발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2009				6	3	9
2010	3	3		5		11
2011	6	1		1		8
2012	5	10		4	1	20
2013	47	50	13	15	2	127
2014 이후	13	4	2			19
미정		1		4	1	6
합 계	74	69	15	35	7	200

주: 기타는 계획수립, 국제협력, 민간투자, 인식 확산 등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다. 투자 규모

- 당초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소요는 부처 요구안을 기준으로 24.5조원으로 발표되었음([표 II-9] 참조)

[표 II-9] 신성장동력별 투자소요

(단위: 조원)

분야	신성장동력	주관부처	투자소요
녹색 기술 산업	1. 신재생에너지	지경부	2.8
	2. 탄소저감에너지	지경부	0.9
	3. 고도 물처리	환경부·국토부	0.6
	4. LED 응용	지경부	0.4
	5. 그린수송시스템	지경부	1.0
	6. 첨단그린도시	국토부	1.0
	소 계		
첨단 융합 산업	7. 방송통신융합산업	방통위·지경부	3.8
	8. IT융합시스템	지경부	2.6
	9. 로봇 응용	지경부	1.1
	10. 신소재·나노융합	지경부·교과부	1.8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복지부·지경부	1.9
	12. 고부가 식품산업	농식품부	1.2
	소 계		
고부가 서비스 산업	13. 글로벌 헬스케어	복지부	0.6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교과부	2.2
	15. 녹색 금융	금융위	0.0
	16. 콘텐츠·소프트웨어	문화부·지경부	2.3
	17. MICE·관광	문화부	0.4
	소 계		
합 계			24.5

주: 재정소요는 2009~2013년까지 정부 예산계획

자료: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요약)」, 2009. 5.

-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약 17조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정⁴⁾되었음
 - 신성장동력은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중에서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및 ⑥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포함되어 있음([그림 II-2] 참조)

[그림 II-2]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규모

<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

< 녹색성장 5개년계획 >

(단위: 조원)		(단위: 조원)	
분 야	투자소요	구 분	투자계획
녹색기술산업	6.7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56.9
첨단융합산업	12.2	신성장 동력 창출	28.6
고부가서비스산업	5.5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일부)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17)
합 계	24.5	삶의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27.9
		합 계	107.4

주: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표현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신성장 동력」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임

자료: 1.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009. 7.

4) 기획재정부는 17조원 투자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4.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현황

□ 신성장동력 추진과제와 관련된 사업의 2009년도 예산 총액은 2조 3,814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2조 9,171억원임⁵⁾

○ 2010년도 예산안은 2009년도 예산 대비 22.5% 증가한 규모임([표 II-10] 참조)

[표 II-10] 17개 신성장동력별 2009년도 예산 및 2010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 %)

	2009 예산 (A)	2010 예산안 (B)	증 감	
			(B-A)	(B-A)/A
신재생에너지	4,101	6,292	2,191	53.4
탄소저감에너지	814	1,229	415	51.0
고도 물처리산업	944	1,060	116	12.3
LED 응용	473	335	-138	-29.2
그린수송시스템	992	1,295	303	30.5
첨단그린도시	1,796	1,795	-1	-0.1
녹색기술산업 소계	9,120	12,006	2,886	31.6
방송통신융합산업	2,798	2,919	121	4.3
IT융합시스템	2,867	3,143	276	9.6
로봇응용	866	1,190	324	37.4
신소재·나노융합	2,205	3,000	795	36.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770	1,667	-103	-5.8
고부가 식품산업	299	722	423	141.5
첨단융합산업 소계	10,805	12,641	1,836	17.0
글로벌 헬스케어	354	378	24	6.8
글로벌 교육서비스	670	420	-250	-37.3
녹색금융	-	36	36	순증
콘텐츠·SW	2,460	2,982	522	21.2
MICE·관광	405	708	303	74.8
고부가서비스산업 소계	3,889	4,524	635	16.3
합 계	23,814	29,171	5,357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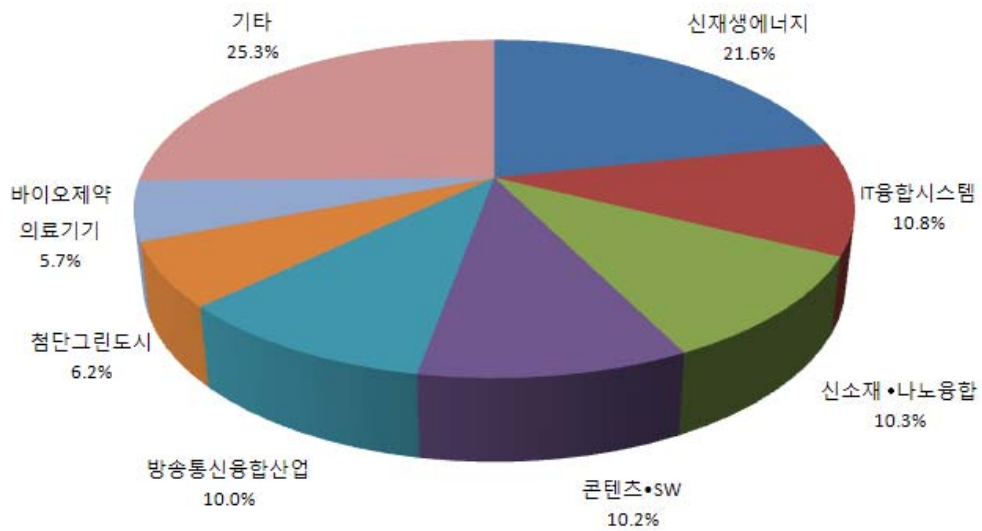
주: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음 금액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세부과제의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국무총리실, 2009. 10.

5) 2009년도 추경을 반영한 예산액은 기획재정부가 제공하지 않았음

- 신성장동력 관련 2010년도 예산안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IT융합시스템, 신소재·나노융합의 순서로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그림 II-3] 참조)
 -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0년도 예산안 6,292억원은 2009년도 예산 대비 53.4% 증가한 규모임
 - 녹색금융은 2009년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으나 2010년도 예산안에 36억원이 반영되었음

[그림 II-3] 2010년도 예산안의 신성장동력별 비중



자료: 국무총리실, 2009. 10.

III.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한 과제

1. 효율적 재원확보 및 투자 전략의 수립

가. 투자재원 확보 후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 필요

- 신성장동력을 비롯한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2010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음
 - 2009년~2013년간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재정투자는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는 연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계획(72 page의 [표 A-3] 참조)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0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 집계하는 수준임

- 신성장동력의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R&D 예산 확충 계획에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예산안 조정 후 이를 2010년도 신성장동력 예산안으로 집계하고 있음
 - 세부사업의 투자규모를 단순 집계하여 발표하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투자규모의 총액 및 증가율 등을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투자 가능한 재원을 부처별 한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민간의 투자규모 제시 및 점검 필요

- 신성장동력은 선정 단계에서부터 민간이 참여하고 있으나 민간투자 활성화의 목표 제시는 미흡
 -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민간 위주의 신성장동력 기획단⁶⁾을 구성하여 신성장동력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민간의 투자규모가 91.5조원으로 제시되었음
 -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에 정부의 투자규모는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민간의 투자규모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민간의 투자규모를 제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민간의 참여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이 창출될 수 없음
- 최근 정부는 민간의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⁷⁾
 - 원천기술의 개발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의 R&D에 대하여 R&D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하였음([그림 III-1] 참조)

[그림 III-1] 신성장동력 관련 R&D비용 세액공제 개선안

	현 행	⇒	개편		
			일 반	신성장동력산업	원천기술
일반기업	R&D당기분×(3~6%) or R&D 증가분×40%	⇒	현행유지	R&D당기분×20%	R&D당기분×25%
중소기업	R&D당기분×25% or R&D 증가분×50%	⇒	현행유지	R&D당기분×30%	R&D당기분×35%

자료: 관계부처합동,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제3차 민·관합동회의 회의자료, 2009. 7. 2.

- 6) 신성장동력기획단(단장 서남표 KAIST 총장)과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훈 대성그룹 회장)에서 6대 분야 22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건의하였으며, 정부 약 7.9조원, 민간 약 91.5조원 등 총 99.4조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 7) 관계부처합동,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제3차 민·관합동회의 회의자료, 2009. 7. 2.

-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나 세제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항목별 투자 촉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장동력별 민간투자 규모의 추정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필요
 - 17대 성장동력별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투자는 물론 민간투자와의 관련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투자 실적에 대한 점검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 적극적인 법률 제·개정 및 제도개선의 추진

- 신성장동력 관련 200대 추진과제에서 제도개선으로 분류된 과제는 35개에 이르고 있음([표 III-1] 참조)
 - 각 부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성장동력 관련 제·개정 대상 법률의 수는 17건, 시행령·고시 등 기타 제도개선 대상은 9건임
 -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에 비하여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대상 법·제도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상 발굴이 필요함

[표 III-1] 신성장동력 관련 제도개선 대상 현황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	제·개정 대상 법률 수	기타 제도개선 대상
녹색 기술 산업	신재생에너지	1	1	-
	탄소저감에너지	-	-	-
	고도 물처리	3	2	-
	LED 응용	1	-	3
	그린수송시스템	1	1	-
	첨단그린도시	3	3	5
	소 계	9	7	8
첨단 융합 산업	방송통신융합산업	1	3	1
	IT융합시스템	1	1	-
	로봇 응용	-	-	-
	신소재·나노융합	-	-	-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	-	-
	고부가 식품산업	1	2	-
소 계	4	6	1	
고부가 서비스 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8	1	-
	글로벌 교육서비스	2	1	-
	녹색 금융	6	1	-
	콘텐츠·소프트웨어	1	1	-
	MICE·관광	5	-	-
소 계	22	4	-	
합 계		35	17	9

주: 1. 기타 제도개선 대상은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 등의 제·개정 사항 및 관련 계획수립 등에 해당하는 사항임

2. 신성장동력별 제도개선 대상은 [참고자료 1] 참조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2009. 8)를 이용하여 재구성

- 특히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재정투자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나, 개선 대상의 파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제도개선 추진과제 35개 중 22개가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지만,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제·개정 대상 법률은 4개⁸⁾에 불과함 ([표 III-2] 참조)

[표 III-2] 고부가서비스산업 관련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대상법률	추진과제	개선할 내용
의료법	-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등록 취소 요건 추가
	-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원격진료 허용범위 및 대상
이러닝산업 발전법	-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조항 신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마련
	- 배출권 거래소 설립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녹색기업 인증제도	
저작권법	- 저작권 보호 강화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단순 이용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개정(공정이용)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2009. 8.

- 신규 서비스 및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개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예를들어 탄소배출권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의 개념 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⁹⁾

8) 각 부처가 제출한 신성장동력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중 고부가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제·개정 대상 법률은 「의료법」, 「이러닝산업발전법」,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저작권법」임

9)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된 사항은 63쪽을 참조하기 바람

3.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의 보완

가.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녹색기술 R&D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 녹색기술개발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
 -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계획과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계획의 전략적 연계성 검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녹색기술위원회에서는 부처별 녹색기술개발계획의 구성과 추진 내용을 종합 조정

-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 정책 및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조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훈령인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법률에 근거한 조직이 아님

- 2009년 2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국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
 - 정부안의 경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리더쉽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민관공동체제가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¹⁰⁾
 - 또한 기후변화 대책 등과 관련한 법안 3건이 의원입법으로 계류중이며, 관련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이 상이함([표 III-3] 참조)

10)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 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표 III-3] 녹색성장 관련 법안의 추진위원회 구성 비교

제명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기후변화대책 기본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대표발의 (제출)자	김성곤 의원	배은희 의원	이인기 의원	정 부
발의일	2008.11.07	2008.11.25	2009.01.14	2009.02.27
추진 위원회	제13조(기후변화대책 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간사위원:환경부장관 제14조(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장 ·부위원장:지경부 차관과 환경부차관 ·사무국(총리실 소속)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3조(기후변화대책 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간사위원:지경부장관 제14조(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장 ·부위원장:지경부차관 ·사무국: 규정 없음 ·분야별 전문위원회	제13조(국가기후변화 위원회)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국무총리 ·간사위원:규정없음 제14조(실무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실장 ·부위원장:규정없음 ·사무국(총리실 소속) ·분과위원회 제15조(타 위원회와의 관계)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국가기후변화위원회 산하에 둠	제 14 조 (녹색성장 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와 민간위원 공동 ·간사위원:대통령실 녹색성장 담당 수석 비서관 ·분과위원회(임의조항) - 위촉위원으로 구성 ·녹색성장기획단 - 위원회 및 분과 위원회 지원 제20조(지방녹색성장 위원회) ·임의조항 ·지자체 장의 소속 으로 구성

자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였음¹¹⁾
 - 특별위원회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부처의 장관 등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와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운영

11) 2004년 12월에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차세대성장동력총괄실무위원회 및 산업별차세대성장동력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08년 2월에 정부위원회 정비로 삭제되었음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은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주관 TF 등으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의하면 녹색성장 관련 정책은 녹색성장 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이 조정하며(〔그림 III-2〕 참조), 신성장동력 관련 R&D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하는 등 추진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음
 - 신성장동력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가 추진과제를 수행하며, 국무총리실의 범부처 TF를 비롯하여 분야별 TF 위주로 추진실적을 관리하는 체계임

[그림 III-2] 녹색성장위원회와 녹색성장기획단의 구성 현황

●● 녹색성장위원회



●● 녹색성장기획단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의견조정 및 추진실적의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 또는 기획재정부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과거 유사 정책의 수행경험 활용 필요

-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추진시에는 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당시 경제부총리 주재로 10대 사업단장 간담회를 개최(2005. 5. 18)하여 사업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TF에서 사업화 지원방안 발굴
 - 사업화 지원방안을 입지, 시장창출, 금융, 세제, 대외협력 등으로 나누어 분야별로 책임부처를 지정하였음
 - 책임부처는 사업단과 산업계의 사업화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당 분야의 제도를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함
 -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2005. 8. 19)에서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매년 추진계획 수립시 추진실적을 점검하였음
- 신성장동력 전반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및 점검 필요
 - 신성장동력 17개 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범부처 TF 내지 전담 부서에서 추진실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과거 유사 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21세기프론티어사업단,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 등과 분야별 TF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다.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계획의 구체화 필요

(1) 특정평가에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반영할 계획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등을 정부부처 평가(특정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 부처포상 실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에서는 ‘특정평가’를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특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
 - 정부업무평가지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은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국무총리가 수립하며, 매년 3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함(「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8조제3항)

(2)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평가항목의 구체화 필요

- 특정평가에서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2010년도 시행계획에 신성장동력 추진실적 점검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참고로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는 특정평가 대상으로 녹색성장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0년 평가부터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상의 과제에 대해서 체계적·포괄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 2009년도 시행계획에서는 녹색성장 관련 평가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는데([표 III-4] 참조), 2010년도 시행계획부터는 신성장동력 추진실적과 관련한 배점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표 III-4] 2009년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녹색성장 특정평가 관련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구분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책형성	15	계획수립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및 의견수렴의 충실성 ○ 정책목표·수단·효과 등에 대한 정책 분석의 적절성 ○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정책집행	25±3	시행과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일정의 충실성 ○ 정책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 ○ 유관기관·정책과의 협조노력
		정책확산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교육, 대국민 소통·홍보, 녹색생활 확산 노력(가감점)
정책성과	60	성과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달성도 ○ 정책효과성

자료: 국무총리실,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성과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2009. 3.

(3) 기존 사업의 성과평가 필요

- 신성장동력사업 중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신성장동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4. 신산업 창출을 위한 고려사항

가.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

- 연구개발 및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연구개발 결과 만들어지는 원천기술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산업화하는 경우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함
 -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¹²⁾,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 발전할 수 없음
- 신성장동력의 콘텐츠·SW 분야 추진과제에 저작권 강화¹³⁾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강화는 미흡
 - 2009년 5월에 발표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¹⁴⁾」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등 저작권 보호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홍보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3%로 세계평균(41%)보다 높으며, OECD 30개국 중 23위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피해액은 약 6억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BSA·IDC,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9. 5.)

13) 주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관리번호는 16-⑤임

14) 기획재정부 등,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나. 국제규정을 고려한 수출산업화 전략 수립

- G7사업으로 추진된 차세대 반도체사업의 경우 국내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상계관세를 부과 받은 사례가 있음
 - 미국 상무부는 2003년 7월 반도체 부문의 정부지원에 따른 미국 DRAM 산업 피해를 이유로 상계관세(Hynix 0.14% 등)를 부과¹⁵⁾

-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과 관련하여 WTO의 보조금 규정 저촉 등에 대한 경쟁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음
 - 당시 각 부처는 차세대 성장동력이 수출증대, 부가가치생산, 고용창출 등에 미치는 효과를 적극 홍보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
 - 정부가 주도한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WTO의 ‘금지보조금 또는 조치 가능보조금’에 해당되어 수출 주력산업이 되는 시기에 통상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¹⁶⁾

-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하여 WTO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통상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보조금 성격을 갖는 연구개발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WTO 보조금협정과의 저촉 여부에 대한 통상법적 검토를 통해 미리 통상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 구체적으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WTO 규정 등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성장동력사업의 대외 홍보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15)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

16)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

1. 녹색기술산업 분야

가. 예산 및 추진과제 현황

- 녹색기술산업 분야에는 신재생에너지 등 6개 신성장동력이 포함되어 있음
 - 2009년도에 녹색기술산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9,120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1조 2,006억원임
 - 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R&D 44개, 재정사업 15개, 인력양성 7개, 제도개선 9개와 기타 4개 등 총 79개임([표 IV-1] 참조)

[표 IV-1]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추진과제 현황

신성장동력	2009 예산	2010 예산안	추진과제					
			R&D	재정 사업	인력 양성	제도 개선	기타	합계
			1. 신재생에너지	4,101	6,292	13	2	3
2. 탄소저감에너지	814	1,229	7	0	0	0	1	8
3. 고도 물처리	944	1,060	8	1	1	3	0	13
4. LED 응용	473	335	1	5	0	1	1	8
5. 그린수송시스템	992	1,295	11	4	0	1	0	16
6. 첨단그린도시	1,796	1,795	4	3	3	3	2	15
합 계	9,120	12,006	44	15	7	9	4	79

주: 1.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음 금액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세부과제의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성장동력별 추진과제의 내용은 [참고자료 2]를 참조

자료: 1.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국무총리실, 2009. 10.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녹색기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비롯한 7개로 조사되었음([표 IV-2] 참조)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녹색기술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6개임([표 IV-3] 참조)

[표 IV-2]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당제(RPS) 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지경부	개정	2012	RPS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3-③	수도기저재 위생 안전 인증제 도입	수도법	환경부	개정	200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근거조항 신설
3-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제정	2009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3-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5-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수상레저안전법	해양경찰청	개정	2010	수상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6-⑦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토부	개정	2009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개정 ITS기본계획, 지방계획 수립 ITS 표준·품질인증제도 도입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6-⑨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토부	개정	2009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공간정보 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자료: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2009. 8.

[표 IV-3] 녹색기술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2009. 9. 23. 기준)

법률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31, 정부)	전기사업자 등 에너지 공급사업자에게 일정 양 이상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1. 12, 정부), (2008. 12. 19, 박준선의원 등 10인), (2009. 4. 3, 조원진의원 등 10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것만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거나 사용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1, 강창일의원 등 11인)	해수담수화로 생산된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가능하도록 상수원의 범위에 해수를 포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9. 6. 8, 정부)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다.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증연구 확대 필요

- 정부는 2008년 9월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계획인 「그린에너지 지산업발전전략(이하 그린에너지전략)¹⁷⁾」을 수립하였음
 - 그린에너지전략에서는 9대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및 기반구축 인력양성 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하였음
 - 2012년까지 국비 1조 7,588원을 포함하여 총 3조 188억원을 투입할 계획임([표 IV-4] 참조)

17)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도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08. 9.

[표 IV-4] 9대 그린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

(단위: 억원, %)

	정 부		민 간	합 계
		비 중		
태양광	2,000	11.4	1,600	3,600
풍력	1,800	10.2	1,100	2,900
수소연료전지	2,000	11.4	1,400	3,400
청정연료	1,100	6.3	700	1,800
석탄이용	2,000	11.4	4,300	6,300
CCS	1,493	8.5	700	2,193
에너지저장	1,270	7.2	500	1,770
LED	937	5.3	600	1,537
전력IT	2,500	14.2	1,700	4,200
기반구축 인력양성	2,488	14.1	-	2,488
합 계	17,588	100.0	12,600	30,188

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투자 계획임

자료: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08. 9.

- 2009년도에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에 2,256억원을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임([표 IV-5] 참조)

[표 IV-5] 지식경제부의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08 (A)	2009 (B)	증 감	
			(B-A)	(B-A)/A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000	27,200	-800	-2.9
전력산업기반기금	166,400	198,400	32,000	19.2
합 계	194,400	225,600	31,200	16.0

주: 추경을 포함한 금액임

자료: 지식경제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2009. 4.

- 기술개발사업은 전략기술개발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핵심기술개발사업, 실증연구사업, 정책기획연구사업, 국제공동연구 등으로 나누어 수행됨
 - 실증연구사업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 중에서 현장적용(Field Test)을 통한 기술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여 해당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사업임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예산에서 실증연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수준에 불과함([표 IV-6] 참조)

[표 IV-6]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

	예탁	전력기금	합 계	비 중
전략기술개발사업	-	115,400	115,400	51.2
핵심기술개발사업	10,953	46,353	57,306	25.4
원천기술개발사업	3,197	25,418	28,615	12.7
실증연구사업	6,711	4,114	10,825	4.8
정책기획/국제공동	3,839	7,115	10,954	4.9
기획평가비	2,500	-	2,500	1.1
합 계	27,200	198,400	225,600	100.0

자료: 지식경제부, 2008. 9.

- 그린에너지전략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결과가 시장창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시장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비 배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경우 기술개발의 성과가 시장 형성 및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실증연구사업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를 병행할 필요가 있음

라. 고도 물처리 관련 인증제도 도입 등의 근거 마련 필요

- 고도 물처리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막여과 정수처리기술의 개발, 수도관망 관리기술 개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에 2013년까지 7,681억원을 투입할 계획임([표 IV-7] 참조)

[표 IV-7] 고도물처리산업 투자계획: 2009-2013년간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막여과시스템 응용기술개발	50	133	144	144	-	471
수도관망 관리기술 고도화	64	982 (968)	968 (968)	968 (968)	-	2,982 (2,904)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	34	34	4	4	76
먹는샘물 품질인증제 도입	- (51)	35 (90)	35 (310)	35 (510)	35 (210)	140 (1,171)
소 계	114 (51)	1,184 (1,058)	1,181 (1,278)	1,151 (1,478)	39 (210)	3,669 (4,075)
[친환경 대체용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기술 고도화	17	17	-	-	-	34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개선	-	-	-	-	-	-
하수처리수 재이용 보급확대	299 (121)	547 (149)	530 (149)	613 (158)	530 (149)	2,519 (577)
폐수처리수 재이용 보급확대	225 (275)	225 (275)	180 (220)	180 (220)	180 (220)	990 (1,210)
소 계	541 (396)	789 (424)	710 (369)	793 (378)	710 (369)	3,543 (1,787)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99 (48)	96 (42)	96 (42)	89 (39)	89 (39)	469 (210)
합 계	754 (495)	2,069 (1,524)	1,987 (1,689)	2,033 (1,895)	838 (618)	7,681 (6,072)

주: 국비 기준이며, ()안은 지방비 및 민간투자임

자료: 환경부, 2009. 7.

- 막여과 정수시설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었으나, 관련 기술개발이나 상용화 정도는 낮은 편임
 - 2006년에 「수도법」 제9조를 개정하여 막여과 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막여과 상용화기술의 정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설치기준고시」를 마련하였음
 - 막여과 시설설치 및 운전과 관련된 공정설계 및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이 부족하고, 핵심 계측장비와 센서 등의 국산화율도 낮은 편임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표준’ 제정과 더불어 상하수도서비스의 국제화, 표준화, 개방화 압력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하여 “수도기자재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이며, 「수도법」의 개정과 같은 법·제도 개선이 필요

- 막여과 방식의 도입 및 수도관망 관리 선진화 등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정부는 수돗물 품질 향상을 위해 수도관망 관리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며,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표준지침」의 제정이 필요함

- 최근 물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수처리 및 정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촉진과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약함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와 더불어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하·폐수처리장에서 중·소규모 하수처리장으로 하·폐수재이용사업이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에 BTO방식과 같이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법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함

마. 그린수송시스템 관련 사업의 타당성 검토 필요

- 교육과학기술부는 그린수송시스템에 포함된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개발을 통하여 수송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고 있음
 - 온라인전기자동차는 주행 중 급전/집전 및 충전이 가능한 신개념의 전기자동차를 개발하여 미래 전기자동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임
 - 모바일하버는 부유식(浮游式), 이동식 컨테이너 항만시스템을 개발하여 항만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임

- 온라인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은 당초 단년도 사업으로 기획되어 2009년도 추경에 포함되었으나,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9년도 추경안 심사 당시 추경 편성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¹⁸⁾ 각각 250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연구개발을 수행 중임
 - 온라인전기자동차는 2010년도 예산으로 1,00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모바일하버는 3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각각 200억원이 반영되었음([표 IV-8] 참조)

[표 IV-8]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2009 예산 (A)	2010		증 감	
		요구안	예산안(B)	(B-A)	(B-A)/A
온라인전기자동차	250	1,000	200	-50	-20.0
모바일하버	250	300	200	-50	-20.0

자료: 1. 한국과학기술원, 2009. 7.
2. 지식경제부, 2009. 10.

1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두 사업이 추경편성 목적에 비추어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핵심원천기술개발 필요성 및 특히 출원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경안을 인정하되, 향후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과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 4)

- 온라인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 사업을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KAIST의 계획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온라인전기자동차는 국비 2,000억원을 포함하여 총 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모바일하버는 국비 1,250억원을 포함하여 2,200억원을 투입할 계획임([표 IV-9] 참조)
 -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이므로 사업의 확대 여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IV-9] 온라인전기자동차와 모바일하버의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억원, %)

		2010	2011	2012	합 계
온라인전기자동차	국비	1,000	1,000	-	2,000
	민간	1,000	1,000	2,000	4,000
	계	2,000	2,000	2,000	6,000
모바일하버	국비	750	300	200	1,250
	민간	450	300	200	950
	계	1,200	600	400	2,200

자료: 한국과학기술원(2009. 7)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바. U-City 시범사업 투자계획 및 자가통신망 관련 검토

(1) U-City 시범사업의 투자 계획 조정 필요

- 국토해양부는 첨단그린도시에 포함된 한국형 U-City 모델창출에는 2013년까지 2,380억원을 투자할 계획([표 IV-10] 참조)

[표 IV-10] U-City 사업 관련 투자계획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U-City 전문인력 양성	18	36	54	72	72	252
U-City 핵심기술 개발·보급	244	275	199	150	-	868
U-City 시범사업 추진	60	300	300	300	300	1,260
합 계	322	611	553	522	372	2,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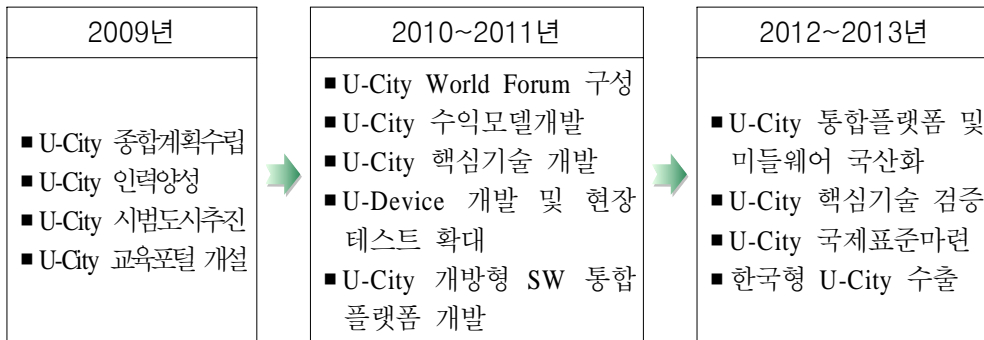
주: 1. 국비 기준

2. U-City 시범사업 추진의 경우 지자체 3곳을 선정하여 국비를 정액지원 하며, 지방비 투자액은 현재 미정(U-City 사업지구당 평균 700억 사업비 소요)

자료: 국토해양부 제공 자료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 2009년에는 U-City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2010~2011년 R&D를 통한 핵심기술을 중점 개발하여, 2012년 이후 최종 기술검증 및 브랜드화를 통한 수출을 시작할 예정임([그림 IV-1] 참조)

[그림 IV-1] U-City 사업 관련 추진전략 및 로드맵



자료: 국토해양부.

-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
 - U-City 시범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3곳을 선정하여 국비를 정액 지원할 계획이나, U-City 운영비 확보 방안은 구체화되지 않았음

- 정부는 2012년까지 U-City의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할 계획임
- 수익모델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운영비 부담과 관련한 문제 발생 가능

(2) U-City 관련 자기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

- 첨단그린도시 분야에 포함된 한국형 U-City 모델창출 부문과 관련하여 자기통신망¹⁹⁾의 연계 활용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처간 의견 조정 필요
 - 현재 U-City를 추진·계획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²⁰⁾에 의해 자기통신망을 선택하여 도입·운영하는 것은 가능함²¹⁾
 - 그러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1조 및 제49조²²⁾에 의하여 자기전기통신설비를 연계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19)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관로, 선로, 통신장비 등)

20) **제20조(자기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기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1) 용인 흥덕, 성남 판교, 파주 운정, 은평 뉴타운 등은 자기통신망을 구축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천 송도 등 일부 신도시와 혁신도시 등은 구축계획을 가지고 있음

22) **제21조(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① 자기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찰 또는 재해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기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제4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이를 운용한 자

- 자가통신망의 연계를 허용할 경우 민간통신사업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신 인프라를 중복 구축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 필요
 - 국토해양부 및 자가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인 지자체는 자가통신망이 초기 구축비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회선 수요 증가에 따른 임대비용 증가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자가통신망 구축이 유리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가통신망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자가통신망의 연계 이용을 허용할 경우, 자가통신망 소유 기관이 필요 이상의 통신망을 구축하여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자원낭비와 중복 투자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간통신사업자의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 첨단융합산업 분야

가. 예산 및 추진과제 현황

- 첨단융합산업 분야에는 방송통신융합산업 등 6개 신성장동력이 포함되어 있음
 - 2009년도에 첨단융합산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조 805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1조 2,641억원임
 - 첨단융합산업 분야 신성장동력과 관련된 추진과제는 R&D 25개, 재정사업 29개, 인력양성 4개 및 제도개선 4개 등 총 62개임([표 IV-11] 참조)

[표 IV-11] 첨단융합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신성장동력	2009 예산	2010 예산안	추진과제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7. 방송통신융합산업	2,798	2,919	5	8	1	1	-	15
8. IT융합시스템	2,867	3,143	6	2	1	1	-	10
9. 로봇 응용	866	1,190	3	5	1	0	-	9
10. 신소재·나노융합	2,205	3,000	3	3	1	0	-	7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1,770	1,667	7	6	0	1	-	14
12. 고부가 식품산업	299	722	1	5	0	1	-	7
합 계	10,805	12,641	25	29	4	4	-	62

(단위: 억원, 개)

주: 1.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음 금액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세부과제의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성장동력별 추진과제의 내용은 [참고자료 2]를 참조

자료: 1.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국무총리실, 2009. 10.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첨단융합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방송법」을 비롯한 6개로 조사되었음([표 IV-12] 참조)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첨단융합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7개임([표 IV-13] 참조)

[표 IV-12]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7-③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방송법	방통위	개정	2009~2010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규정 개선 및 방송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통위	제정	2009~2010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하고, 방송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방송통신사업법	방통위	제정	2011	방송통신에 대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여 단일 사업법으로 정비
8-⑩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항만법	국토부	개정	2009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RFID부착의무화
12-③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염관리법	농식품부	개정	2009	「소금산업법」으로 전부 개정, 소금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조항 신설
12-④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식품산업진흥법	농식품부	개정	2009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근거조항 신설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2009. 8.

[표 IV-13] 첨단융합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2009. 9. 23. 기준)

법률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2, 이경재의원 등 11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대한 의무 재송신 제외 규정을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31, 이경재의원 등 14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009. 4. 17, 최문순의원 등 10인), (2008. 12. 19, 정부)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3. 30, 이윤석의원 등 28인)	제조염과 수입염에 대한 품질검사제도를 도입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6. 15, 조배숙의원 등 29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및 국가 식품클러스터추진단의 설립을 명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9. 11, 장세환의원 등 21인)	전통식품의 개발·보급 및 세계화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다. 고부가식품산업 관련 투자의 효율화 방안

(1) 고부가식품 분야 투자와 농림어업 발전의 연계 필요

- 고부가식품 분야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2조원의 재정소요를 예상하고 있음([표 IV-14] 참조)
 -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중 식품업의 5년간 재정소요는 2조 6,422억원으로서, 신성장동력에 포함된 7개 과제의 재정소요는 재정운용 계획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V-14] 고부가 식품산업 관련 투자계획

(단위: 억원)

과제명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고부가 식품 원천·응용기술 개발	-	200	600	1,000	800	2,600
전통·발효식품 육성의 산업화·현대화	116	157	168	140	149	730
천일염 세계 명품화	33	35	36	37	40	181
식품 클러스터 조성	20	376	415	665	1,095	2,571
세계김치연구소 설립	30	420	100	100	100	750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 확충	-	84	168	140	-	392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100	1,105	1,216	1,216	1,172	4,809
합 계	299	2,377	2,703	3,298	3,356	12,033

주: 기획재정부 조정 이전의 투자계획으로서 재정(국비) 소요치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5.

-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산업과 농업이 연계되지 않고 분리 발전되어 식품산업의 진흥이 농업 발전과 괴리되는 문제점이 있음
 - 2006년 기준 식품산업의 매출액(99.8조원)은 2000년 대비 37.3% 증가하였고, 종사인력(163만명)도 일부 증가됨
 - 동 기간 중 농림어업의 생산액은 12.1%에 증가에 그치며(2006년 41.7조원), 종사자수는 224만명에서 179만명으로 감소됨([표 IV-15] 참조)

[표 IV-15] 농림어업과 식품산업의 생산액 및 종사자수 비교

(단위: 조원, 천명, %)

	농림어업		식품산업	
	생산액	종사자수	생산액	종사자수
2000 (A)	37.2	2,243	72.7	1,608
2006 (B)	41.7	1,785	99.8	1,629
(증가율) (B-A)/A	(12.1)	(-20.4)	(37.3)	(1.3)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2008. 5.

- 서구 제국에서 식품산업은 지역 내 원료 농산물을 활용하는 지역산업으로 출발·발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의 식품산업과 농업의 상호 연결관계는 미흡함
 - 식품가공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 비중을 보면, 1990년 초반 국내산이 84.3%에서 2003년 67.6%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수입농산물은 15.7%에서 32.4%로 상승되었음([표 IV-16] 참조)

[표 IV-16] 식품가공산업 원료의 국내산과 외국산 비중

(단위: %)

	1990	1995	2000	2003
국내산	84.3	78.2	78.3	67.6
외국산	15.7	21.8	21.7	32.4

자료: 최지현, 「식품산업과 농업 연계성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7. 12.

- 식품산업에 대한 농림어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원재료 사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식품업계의 계약생산 참여와 산지 농어업경영체의 가공산업 진출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함
 - 계약재배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비중은 2007년 기준 7% 수준이며, 산지 가공업체(정부지원) 매출액은 6,800억원으로 식품제조업 전체 1.4% 수준임
 - 농림수산식품부가 기추진하고 있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연계강화 사업들을 신성장동력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²³⁾

23)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예산안에는 지역단위의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강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614억 7,000만원), 농어업 경영체의 식품가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생산자융복합형식품제조기업육성사업(60억원), 식품업체의 국내산 원료 구매자금을 융자하는 농식품 소비자·산지상생협력사업(2,058억 1,2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참고로 일본은 식료(食料)산업 클러스터를 통하여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 식료산업 클러스터는 지역의 식재(食材), 인재, 기술 등의 자원을 유효하게 상호 연관시켜 새로운 제품, 새로운 판로, 새로운 지역브랜드 등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식료산업 클러스터 협의회를 조직하고 코디네이터를 육성하여 농업, 대학 등 연구기관, 식품업체 등의 클러스터 형성주체간 연결고리로 활용
 - 클러스터 내에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브랜드화 하기 위하여 ‘지역브랜드확립지원사업’ 등 정부가 각종 육성지원책을 추진
 - 농림수산성 중심의 중앙단위로 추진되는 사업과 식료산업클러스터협의회 중심의 지방정부 사업간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도모

(2) 천일염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고부가식품 분야에 포함된 천일염 세계 명품화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관련 법·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천일염은 1963년 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45년간 광물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는 식품이 아니었지만, 2008년 3월부터 식품위생법상 ‘식품’으로 인정되어 천일염은 수산물로, 천일염 생산자는 어업인으로 규정
 -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산 식용천일염 유통은 식품위생법을, 수입 천일염 유통은 대외무역법과 식품위생법을, 공업용 천일염 유통은 염관리법을 각각 적용
 - 식품산업 행정 일원화를 위해 소금산업 관리업무가 지식경제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2009. 3.)
-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소금산업법」 개정 필요
 - 소금 수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1997년 190만톤(75.3%)이었던 수입 소금은 2008년에는 274만톤(83.1%)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표 IV-17] 참조)

- 특히 수입 소금 가운데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큰 중국산 천일염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천일염 생산량(29만 6천톤)과 거의 맞먹을 정도인 27만 9천톤이 수입됨
- 가격 또한 중국산 소금이 kg당 평균 43원으로 국내 천일염의 산지가격(kg당 200원)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폭락을 초래하는 한편, 수입된 값싼 소금의 상당량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되면서 품질이 뛰어난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인식에까지 악영향을 미침
- 현행 염관리법으로는 이러한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유통 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소금산업의 육성, 식품생산에 적합한 품질 관리, 연구개발, 원산지 표시제도 등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소금산업 육성법」의 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표 IV-17] 연도별 소금 수급현황

(단위: 천톤, %)

			1997	1999	2001	2005	2007	2008
수요			2,560	2,862	3,090	3,174	3,208	3,298
공급	국내염	천일염	335	286	261	296	296	384
		기계염	281	231	240	173	159	159
		부산물염	6	16	16	7	11	13
		소 계	622	533	517	476	466	556
	수입염		1,896 (75.3)	2,360 (81.6)	2,575 (83.3)	2,698 (85.0)	2,742 (85.5)	2,742 (83.1)
	합 계		2,518	2,893	3,092	3,174	3,208	3,298

주 1: 각 수치는 일반가정용과 식품공업용 합계임

2: ()내는 총 공급량 대비 비중

자료: 대한염업조합, 각년도

3.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가. 추진과제 현황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는 글로벌 헬스케어 등 5개 신성장동력이 포함되어 있음
 - 2009년도에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3,889억원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4,524억원임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R&D 5개, 재정사업 25개, 인력양성 4개 및 제도개선 22개 및 기타 3개 등 총 59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음 ([표 IV-18] 참조)

[표 IV-18]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예산 및 입법 과제 현황

신성장동력	2009 예산	2010 예산안	추진과제					
			R&D	재정사업	인력양성	제도개선	기타	합계
13. 글로벌 헬스케어	354	378	1	1	1	8	0	11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670	420	1	6	0	2	0	9
15. 녹색 금융	-	36	0	2	1	6	3	12
16. 콘텐츠·소프트웨어	2,460	2,982	3	9	2	1	0	15
17. MICE·관광	405	708	0	7	0	5	0	12
합 계	3,889	4,524	5	25	4	22	3	59

주: 1. 2009년도 예산은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2010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사과정과 세부과제의 공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신성장동력별 추진과제의 내용은 [참고자료 2]를 참조
 자료: 1.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2. 국무총리실, 2009. 10.

나. 제·개정 대상 법률 현황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제·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의료법」을 비롯한 4개로 조사되었음([표 IV-19] 참조)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안 중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육성 및 제도개선과 관련된 법률안은 8개임([표 IV-20] 참조)

[표 IV-19]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제·개정 대상 법령

관리 번호	추진과제	개선대상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3-②	의료기관 국가 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의료법	복지부	개정	2010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13-⑤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개정	2009	등록 취소 요건 추가
13-⑩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개정	2009	원격진료 허용범위 및 대상
14-③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이러닝산업 발전법	지경부	개정	2010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저 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총리실 (녹색위)	제정	2009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 신설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15-⑨	녹색기업 인증 제도					
16-⑤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법	문화부	개정	2010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단순 이용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 (공정이용)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2009. 8.

[표 IV-20]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 관련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현황(2009. 9. 23. 기준)

법률안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29, 홍준표의원 외 171인)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 7. 22, 손숙미의원 등 12인)	사업실적이 없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를 할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등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2009. 2. 27, 정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2008. 11. 7, 김성곤의원 등 33인), (2009. 1. 14, 이인기의원 등 25인)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 (2008. 11. 25, 배은희의원 등 2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 12. 5, 변재일의원 등 12인), (2009. 4. 2, 최문순의원 등 10인)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다. 글로벌 헬스케어 및 글로벌 교육서비스 관련 정비대상 법률

-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 비영리 의료법인이 신규·채투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2008. 10월 국회 제출)

-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영리법인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사항(현재 상임위 계류중)
 -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으로 경영 합리화 및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의료법」 개정 사항(2010년 계획)
 -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 종전의 의료기관 평가를 자율평가에 의한 국가인증제로 전환: 「의료법」 개정 사항(2010. 7월 계획)
 -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 해외환자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법상 조정·중재 제도’를 분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사항(2009년 계획)
 -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 허용(「의료법」 제34조), 의약품 배달판매 허용(「약사법」 제50조) 등 제도적 기반 조성(2009년 계획)
 -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 추진(2011년 계획): 별도 법률 검토 중
 -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조성(2009년 계획)
 -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 해외 자국민 및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2009년 마련, 2010년 시행 계획)
-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
- 「U-러닝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2010년 계획)

라.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검토

(1)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의 보완 필요

- 정부의 녹색산업 금융지원 정책은 공공부문(정부, 금융공기업 등)의 직·간접 지원과 민간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로 구별할 수 있음([표 IV-21] 참조)

[표 IV-21] 녹색산업 금융지원의 정책 방향

공공부문의 직·간접 지원 정책	민간금융기관의 녹색금융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 R&D 사업에 재정지원 확대 -산업은행의 출자로 녹색펀드 조성 -연기금의 녹색펀드 투자에 대한 참여유도 -중소기업은행은 녹색기업에 대하여 대출한도, 금리 등을 우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은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하여 금리, 수수료 등을 우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녹색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확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녹색프로젝트 사업자가 발행한 사회기반시설채권에 대해 보증료를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녹색채권·녹색예금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이자소득 비과세)을 통하여 민간자금을 조달하여 녹색프로젝트에 대출하도록 유인 -녹색 사회적 책임투자지수 개발, 녹색 리그 테이블 발표, 녹색산업 주가지수 개발, 녹색경영 정보공시 강화 등을 통하여 민간 녹색금융상품 활성화

- 녹색산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외부효과²⁴⁾가 크므로 공공부문의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특정 녹색산업 또는 녹색기업에 대하여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공공지원에의 의존성이 커지고,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초기단계의 녹색산업 및 창업초기 녹색기업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24) 사적 수익보다 사회적 수익이 크게 나타남을 의미함

- 공공부문 지원수단 중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수단임
 - 녹색기업과 금융기관 모두에게 효과 있는 정책수단이므로 초기단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임
 - 그러나 성장·성숙 단계의 녹색산업이나 녹색기업이 지속적으로 신보·기보의 보증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보증지원을 함에 있어서 녹색기업에 대한 심사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으며,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임

-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금융기관이 세제지원(이자소득 비과세)되는 녹색채권·녹색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이 녹색 중소기업 등에 유입될 수 있도록 유인체계 또는 제도장치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민간의 자금이 녹색금융으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색산업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
 - 투자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허위·과장 광고의 차단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배출에 대한 총량규제의 법제화가 선행되어야 가능함
 - 전국적으로 배출가능한 탄소총량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그에 따라 탄소배출권의 적정 발행규모를 결정해야 함
 - 탄소는 관련 산업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대상에 대한 정교한 기준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탄소 배출총량에 대한 연차별 규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산업과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사전조사 필요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따른 시장의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가능여부가 달라질 것임
 - 탄소배출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증권)에 해당한다면,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임
 - 탄소배출권이 금융투자상품(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고 별도의 시장을 개설해야 할 것임
 - 다만,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함
 - 따라서 탄소배출권의 개념정의와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입법조치가 있어야 함

-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탄소배출권시장은 탄소배출총량을 규제하되, 각 기업의 배출량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제도임
 -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탄소배출총량 규제의 확실성과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특정 기업이 탄소배출권의 보유량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경쟁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을 막음으로써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경우 시장교란은 더욱 클 수 있음

- 특히, 외국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을 대량 매입할 경우, 우리나라 탄소 배출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또한, 탄소배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기업 등의 탄소배출 행위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마. 콘텐츠·SW 관련 법·제도 등 환경정비 필요

- 콘텐츠 창작 기반 및 유통환경과 금융지원 제도, 범정부적 지원체계 등과 같은 법·제도적 환경의 정비 필요
- 2009. 2. 24일 정부가 제출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4월 17일 상정된 후 계류 중임
 - 동 법률안은 제명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하면서, 콘텐츠 제작 활성화, 재원으로서 ‘정보통신진흥기금’ 활용,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는 「문화산업 진흥법」과의 중복 규정 및 규정 내용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 마련, 거래인증제의 참여율 제고, 서비스 품질 인증기관의 법률에 의한 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함
 - 동 법률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절하게 수정하고, 콘텐츠 진흥 정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현재까지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하여 특성화된 보증 및 융자 지원이 2009년 2월 「문화산업진흥법」개정, 2009년 5월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거는 확보하였으나, 일부 보증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
 - 특히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력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콘텐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위한 조세제도 개선 필요

- SW산업은 불안정한 시장 환경과 고급 SW인력 부족, 기술력 취약, SW 시장 창출 역량이 미흡
 - 2009년 이후 SW인력양성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실시하였으나, 단기간의 투입으로 사업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
 - 지원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선제적인 분야의 지원 및 역량확보를 위하여 적재적소의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
 - SW의 불법복제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홍보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SW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됨

바. MICE²⁵⁾·관광 관련 중장기 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우리나라의 외래관광객 수 등 관광비중은 저조
 -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도 OECD 30개국 중 30위 수준이며, GDP 대비 MICE 산업 비중은 0.45%에 불과
- MICE 산업은 국토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가 달라 전반적인 추진체계가 미확립되어 있으며,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미흡
 - 대부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제행사 유치 후 컨벤션센터 건립 등 건설사업에 추진되어 있으며, 건립 이후의 활용방안이 미흡하여 수익성 미비
 - 중장기적인 MICE 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합적인 산업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부존재
 - MICE·관광산업의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과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하여 독자적인 관리 산업으로 육성하여 추진할 필요

25) 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vents

- MICE·관광 산업의 사업간 연계성 미흡으로 숙박·교통·상업시설 등이 연계되지 않아 지역 전반적인 관광수요의 확대에 이르지 못함
 - 도시 중심에 있는 건축물은 서울 COEX, 부산 BEXCO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아 국제행사 참관 고객의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이용 불편으로 관광 확대가 미흡
 - 컨벤션 시설 건립 시 도심 접근성 제고를 통하여 관광 수요를 확대하고, 컨벤션시설의 상업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한 컨벤션 시설 자체의 사업 개발 유도 필요

- 관광 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태관광, 도서 개발 등의 사업이 환경친화적으로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 필요
 - 생태관광이나 지역의 관광지 개발 사업이 매년 집행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 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지연에 따른 측면도 많은데, 이는 사전계획 수립이 환경과의 조화보다는 개발에 초점이 있기 때문
 - 향후 사업계획 수립 등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V. 결 론

- 신성장동력의 육성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R&D 예산 확충 계획에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 기획재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 및 녹색성장과 관련된 세부사업의 예산안 조정 후 이를 2010년도 신성장동력 예산안으로 집계하고 있음
 - 세부사업의 투자규모를 단순 집계하여 발표하는 것은 적극적인 투자계획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투자규모의 총액 및 증가율 등을 설정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육성에 투자 가능한 재원을 부처별 한도 내에서 별도로 설정하고, 이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관련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투자의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
 - 17대 성장동력별로 정부와 민간의 투자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정부투자는 물론 민간투자과 관련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투자 실적에 대한 점검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바람직하나 세제지원 항목의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분석
 - 정부는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항목별 투자 촉진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대상 법률 및 제도의 적극적인 발굴과 제·개정 노력 요구
 - 제도개선 추진과제 수에 비하여 각 부처가 파악하고 있는 개선대상 법·제도는 적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상 발굴이 필요함
 - 특히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는 재정투자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신성장동력 육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므로, 법·제도 개선 대상의 파악을 위한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주관 TF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추진체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하여 정비
 - 다부처 공동추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의견조정 및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부처간 이견조정 방식, 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 등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등 과거 유사 정책의 수행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은 정부부처 평가에 반영하고, 매년 추진실적이 우수한 동력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인데,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 계획 및 평가항목은 보다 구체화
 - 신성장동력 추진실적을 특정평가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지행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신성장동력 추진실적과 관련한 배점을 명시하는 등 평가항목과 평가지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사업 중 기존 사업으로 추진되어온 사업의 경우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
 - 신성장동력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와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

- 신성장동력이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화
 -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콘텐츠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없이 발전할 수 없음
 -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 등 저작권 보호조치의 강화와 더불어,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하여 WTO 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범부처적으로 통상분쟁에 대비
 -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WTO 규정 등에 따른 통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사전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술산업 분야 및 첨단융합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한 검토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은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연구개발 결과물이 시장 수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실증연구사업 투자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고도 물처리와 관련해서는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 제고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촉진과 초기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도 필요함
 - 그린수송시스템 관련 온라인전기자동차 및 모바일하버 사업은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첨단그린도시 관련 U-City 시범사업은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이 동시에 추진될 경우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자가통신망의 연계 허용 문제는 통신 인프라가 중복 구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고부가식품 분야 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식품산업과 농림어업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천일염 세계 명품화를 위하여 원산지 단속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고부가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녹색금융, 탄소배출권 등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사항의 발굴과 환경정비
 - 글로벌 헬스케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자본조달 수단 확대, 의료기관 국가인증제 도입,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등 다양한 법·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녹색금융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한 심사 체계의 확보와 민간의 자발적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탄소배출권시장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의 총량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하며, 탄소배출총량에 대한 연차별 규제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 특히 탄소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이 거래될 경우 시장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시장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국내의 계획

1. 타 계획과 신성장동력의 관계

가.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 ‘녹색성장’은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 삶의 질 개선 및 생활의 녹색혁명, 국제기대에 부합하는 국가위상 정립을 포괄하는 개념([그림 A-1] 참조)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 제9조에 의하여 수립되었으며,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²⁶⁾

[그림 A-1] 녹색성장의 개념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 7.

2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2009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09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2009년 7월 6일에 발표된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이다.

-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 7월에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은 신성장동력을 포함하는 최상위 국가계획([표 A-1] 참조)
 - 녹색성장 국가전략은 2050년까지의 장기 계획이며,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2013년까지의 중기계획임
 - 녹색성장 5개년계획은 녹색뉴딜, 신성장동력사업,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기존 계획의 목표치 및 부처별 재정 투자계획을 재검토하고 통합 조정

[표 A-1] 녹색성장 관련 계획의 체계

계 획		수립주체 (수립시기)
종합 계획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위원회
	5개년 계획	총리실, 기획재정부
	기관별 종합계획	
	중앙추진계획	중앙행정기관
	지방추진계획	지자체
부문별 계획	핵심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지속가능발전 등
	연관계획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 등
	기타연관계획	신재생 에너지 개발 계획 신성장동력 발전 전략 그린 IT 전략 등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 2009. 2.

-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는 3대 전략(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 동력 창출²⁷⁾,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및 10대 정책방향을 제시

27)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3대 전략 중 하나로 표현된 ‘신성장 동력 창출’은 「신성장 동력」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임

- 신성장동력은 10대 정책방향 중 ④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와 ⑥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포함됨([표 A-2] 참조)

[표 A-2]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전략 및 정책방향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①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②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 ③ 기후변화 적응 역량 강화
신성장 동력 창출	④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⑤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⑥ 산업구조의 고도화 ⑦ 녹색경제 기반 조성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⑧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⑨ 생활의 녹색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주: 10대 정책방향 중 ④번과 ⑥번이 신성장동력 관련 내용임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7.4조원 소요 추정
 - 계속사업 투자소요, 신규사업 추진, 국책과제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 연평균 10.2% 수준 증액 투자 전망([표 A-3] 참조)
 - 관련 소요를 「09~'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

[표 A-3]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재정투자계획

(단위: 조원, %)

	2009	2010~2011	2012~201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8.6	29.2	19.2	56.9	14.0
신성장동력 창출	4.8	10.7	13.1	28.6	9.4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5.2	10.5	12.2	27.9	3.6
합 계	17.5	48.3	41.5	107.4	10.2

자료: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 2009. 7.

나. 녹색 뉴딜

-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 방안」²⁸⁾을 작성하여 국무회의(2009년 1월 6일)에서 심의·발표
 -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부처별로 입안되고 있는 관련 사업간 연계를 확보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적 실천방안으로 마련([표 A-4] 참조)

[표 A-4] 녹색 뉴딜 관련 부처간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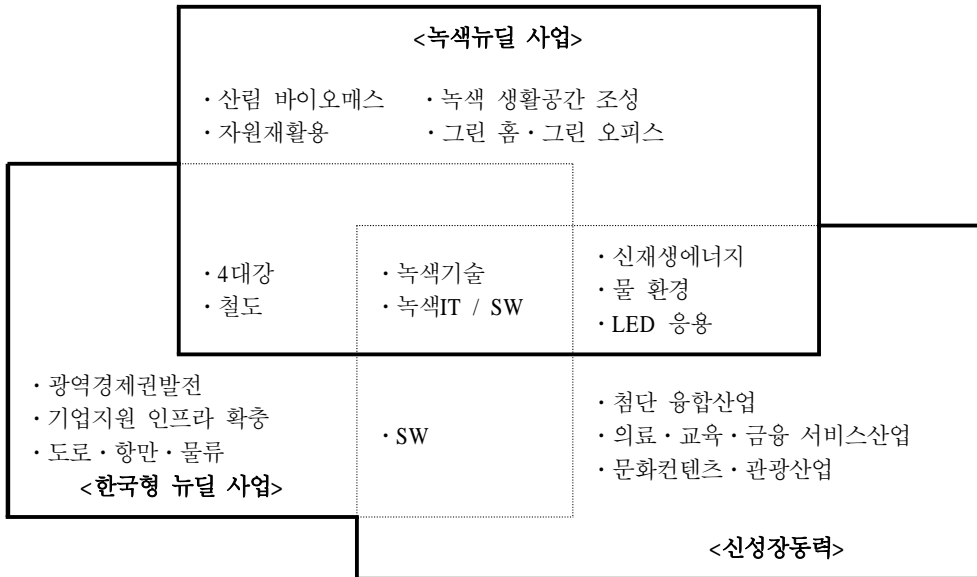
부 처	역 할
녹색성장위원회 및 기획단	정책방향·전략 설정 및 평가
기획재정부	부처간 중복사업 조정과 연계사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재정조정·지원체계 운용
각 부처	녹색뉴딜사업의 발굴 및 선정된 사업의 집행

- 녹색뉴딜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 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및 여타 「녹색」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그림 A-2] 참조)
 - 「한국형 '뉴딜」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높은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는 사업²⁹⁾

28)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29) 국토해양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 2009년 업무보고, 2008. 12.

[그림 A-2] 녹색 뉴딜 사업과 신성장동력의 관계



자료: 기획재정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 9개 핵심사업 및 27개 연계사업을 녹색 뉴딜 사업으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 까지 약 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표 A-5] 참조)
 -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에 따른 재정소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

[표 A-5] 녹색 뉴딜 사업 재정소요

(단위: 억원)

사업명		재정소요		
		기반영(~2009)	추가소요(~2012)	합 계
핵심 사업 ^ 9 개 v	4대강 살리기 등	4,881	139,895	144,776
	녹색 교통망 확충	18,349	78,187	96,536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250	3,467	3,717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1,845	7,577	9,422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3,209	17,318	20,527
	폐기물자원 재활용	506	8,794	9,300
	녹색 숲 가꾸기	3,131	21,043	24,174
	그린홈, 그린스쿨 사업	-	80,500	80,500
	eco river 조성 등	52	4,786	4,838
연계 사업 ^ 27 개 v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137	19,901	25,038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437	1,666	2,103
	수변지역 녹색화	331	7,669	8,000
	환승시설 구축	1,782	3,396	5,178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200	1,544	1,744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자전거 급행도로 시범사업)	-	4,980	4,980
		-	3,000	3,000
	건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	340	340
	전자문서 활용촉진	-	800	80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400	2,199	2,599
	해외 물산업 진출	199	1,790	1,989
	해수담수화 기술개발	246	878	1,124
	하수처리수 재이용	403	3,364	3,767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414	1,522	1,936
	바이오에탄올 차량보급 확산	-	30	30
	바이오에탄올(E5) 등 시범보급	-	272	272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362	10,858	11,220
	바이오매스 생산기반 구축	546	2,262	2,808
	사용종료매립지 재개발	-	5,300	5,300
	재해예방, 훼손산림 복원	786	6,541	7,327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65	816	881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95	755	850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	13,356	13,356
	그린IT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	100	100
	그린홈 닥터 양성	-	160	160
	건물옥상, 벽면녹화사업	-	1,130	1,130
	에코로드 조성	-	310	310
소규모 유희시설 문화공간화	-	360	360	
합 계	43,626	456,866	500,492	

주: 재정소요는 국고와 지자체 및 민간 부담분의 합계액으로 부처 제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2009. 1.

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

-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 회의 (2009. 1. 13)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도 함께 확정
 - 신성장동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총 21개 원천기술과제와 신성장동력화의 기반을 이루는 공공적 기술 과제 등 6개 등 총 27개 과제를 선정 ([표 A-6] 참조)

[표 A-6] 「신성장동력」과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관계

	신성장동력	중점녹색기술
신성장동력과 직접 연관	신재생에너지	-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고효율 저가화 기술 - 폐기물 저감, 재활용, 에너지화 기술 등 6개
	탄소 저감 에너지	- CO ₂ 포집, 저장, 처리기술 등 2개
	고도 물처리	- 수계수질평가 및 관리기술 등 2개
	LED 응용	- 조명용 LED·IT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그린수송시스템	- 고효율 저공해 차량 기술 등 2개
	첨단그린도시	-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 기술 등 2개
	IT융합시스템	- 전기기기 효율성 향상 기술 등 2개
	신소재·나노융합 산업	- 환경부하 및 에너지 소비 예측을 고려한 Green Process 기술 등 2개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친환경 식물성장 촉진기술(바이오 자원)
	콘텐츠·소프트웨어	- 가상현실 기술
	소 계	21개 기술
신성장동력화 기반	공공적 기술과제	· 기후변화 예측 및 모델링개발 기술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4개
	20년 이상 장기투자 과제	· 핵융합로 설계 및 건설기술 · 고효율 수소제조 및 수소저장 기술
	소 계	6개 기술
합 계		27개 기술

자료: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보도자료, 2009. 1.

-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녹색기술 부문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
 - 2007년도에 약 9,000억원인 녹색기술 부문 R&D 투자를 2012년까지 연간 2조원 수준으로 높여 향후 4년간 총 6.3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
 - 또한 녹색기술 R&D 투자 중 기초·원천연구를 보다 확대하여 2007년 17%(0.15조원)에서 2012년 35%(0.7조원)까지 확대할 계획

[그림 A-3]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녹색기술 R&D의 관계

		[신성장동력]		[녹색뉴딜]		
재정사업		전문인력 등 인프라 구축 로봇랜드 등 시범사업		그린카, 그린홈 보급 등	4대강 살리기 등	
R&D	응용	로봇 응용 기술개발 하이브리드카 핵심기술개발	지능형 교통 물류	해수담수화 등		[녹색기술 R&D]
	기초	신소재· 나노융합 기초원천 등	CO ₂ 포집 저장 기술 등		기후변화 예측 기술 등	
제도 개선	제도	규제완화 신산업 법제 정비(교육, 의료 등) 산업표준지원 보급촉진제도도입 등				
	세제	시장창출지원(취·등록세·소비세 등), 장기 고위험투자·R&D 세액공제 등				

자료: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보도자료, 2009. 1.

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2009. 5. 8)에서 「경제난극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

-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한 선진화 방안 마련([표 A-7] 참조)
- 민관 공동 위원회 및 10개 분야별 TF를 구성·운영하며, 규제합리화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추진

[표 A-7]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분야별 주요 핵심과제

	주요 내용
차별개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및 지식기반산업 대상 업종 확대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교육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결산상 잉여금 송금 허용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완화 외국인 유학생 수학여건 개선 (기숙사 수용률 제고 등)
콘텐츠	불법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 강화 표준계약서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공정거래 기반 조성
IT서비스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상향 조정 SW 프로세스 품질인증제 활성화
디자인	융합형 디자인대학(원) 추진 디자인 서비스 바우처 사업 확대
컨설팅	컨설팅 대학원 확대 산업단지 등 입주대상에 컨설팅기업 포함 MDB ¹⁾ 와 공동 컨설팅 프로젝트 추진
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기반 조성 의료기관의 경영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유치 제도 기반 조성
고용지원	직업소개 수수료 규제 완화 파견가능 업무 범위 확대
물류	3자 물류 확대를 위한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 강화 영업용 화물차 인센티브 부여
방송통신	신규 종합편성 PP 도입 민영 미디어랩 도입 SO ²⁾ ·PP ³⁾ 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주: 1)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World Bank, ADB 등 국제개발은행의 통칭

2) SO(System Operator,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케이블을 통해 방송을 시행하는 사업자

3) PP(Program Provider,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위성방송 등에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

자료: 기획재정부, 「10개 분야에 대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보도자료, 2009. 5.

- 신성장동력의 고부가서비스 분야 세부추진계획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보다 내용이 추가되었음([표 A-8] 참조)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서비스산업 전반의 법·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중심으로 발표
 - 신성장동력의 고부가 서비스산업 세부추진계획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다루지 않았던 금융, 관광 부문의 신성장동력화 방안을 제시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추가하여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해외진출 방안을 추가

[표 A-8]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관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신성장동력 (고부가서비스 분야)
발표일	2009. 5. 8.	2009. 5. 26.
내 용	- 서비스산업 전반의 법·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 서비스산업 전반의 법·제도개선 및 인력양성 - 기술개발, 융복합화를 통한 신산업 창출 및 해외진출방안
대 상	- 차별개선, 교육, 콘텐츠, IT서비스, 디자인, 컨설팅, 의료, 고용지원, 물류, 방송통신(10개 부문) - 총 152개 과제(단기 114개, 중기 38개)	-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 서비스, 녹색금융, 문화콘텐츠·SW, MICE·관광(5개 동력) - 59개 추진과제

2. 과거 우리나라의 유사 사업

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 확보를 위한 사업 현황

-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은 1990년대 이후 연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표 A-9] 참조)
 -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 전략기술을 선택적으로 집중 개발

[표 A-9] 신성장동력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

(단위: 억원)

사업명	사업기간	투자규모	목표
선도기술개발사업 (G7 프로젝트)	1992~2001	15,710	- 2000년대 과학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21세기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1999~2012	19,829	-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선진 경제를 실현하고,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구현 - 기술혁신의 성과를 사회기반 전 분야로 확산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003~2008	20,056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5~10년 후 우리 경제의 주력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기술역량이 있는 10대 산업을 발굴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신성장동력	2009~2012	약17조원	-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주: 투자규모는 정부예산 기준이며, 2008년도까지의 집행액 및 2009년도 예산액, 2010년 이후 계획액의 합계임

나. 선도기술개발사업(G7 프로젝트)

□ 2000년까지 과학기술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

- 우리나라 최초의 범부처적 협동연구개발사업으로, 구 과학기술부, 구 정보통신부, 구 산업자원부 등 8개 부·청이 참여
- 제품기술개발사업 9개와 기반기술개발사업 9개로 구분하여 총 18개 사업이 1992년부터 10년간 수행되었음([표 A-10] 참조)

[표 A-10] G7 프로젝트의 개발과제 현황

		사업기간	관련부처
제품 기술 개발 사업	신의약·신농약	1992~1997	과기부, 복지부
	광대역종합통신망(B-ISDN)	1992~2001	정통부, 과기부
	고선명TV	1992~1993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차세대자동차	1992~2001	산자부, 과기부
	주문형반도체	1995~1999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1995~2000	산자부, 과기부
	의료공학	1995~2001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초소형정밀기계	1995~2001	산자부, 과기부
	고속전철	1996~2001	건교부, 산자부, 과기부
기 반 기 술 개 발 사 업	차세대반도체	1993~1996	과기부, 산자부
	정보전자에너지 첨단 소재	1992~2001	과기부
	첨단생산시스템	1992~2001	산자부, 과기부
	신기능생물소재	1992~2001	과기부, 농림부, 농진청
	환경공학기술	1992~2001	환경부, 과기부, 산자부, 건교부
	신에너지기술	1992~2001	산자부, 과기부
	차세대원자로	1992~2001	과기부, 산자부
	차세대 초전도 토카막장치	1995~2001	과기부
	감성공학	1995~2001	과기부, 산자부

자료: 구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설정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1. 12.

- 정부 1조 5,710억원, 민간투자 1조 9,619억원 등 총 3조 5,32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비마약성 진통제(KR-25018), 대면적 고품위 TFT-LCD 기술 등 개발³⁰⁾

30)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 2009. 2.

다.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 선진국과 경쟁이 가능한 전략기술을 선택하여 집중개발하기 위한 사업
 - 당초 총 사업비는 4조원(정부 1조 9,660억원, 민간 2조 340억원)으로 계획되었으며, 2012년까지 정부 투자는 1조 9,829억원으로 예상([표 A-11] 참조)

[표 A-11]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1999~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교과부	908,437	140,400	139,930	105,800	110,000	50,000	1,454,567
지경부	324,000	55,000	54,000	38,666	38,666	18,000	528,332
합 계	1,232,437	195,400	193,930	144,466	148,666	68,000	1,982,899

주: 투자규모는 2008년도까지의 집행액 및 2009년도 예산액, 2010년 이후 계획액의 합계임

- 전략기술별로 사업단을 구성하여 10년간 연구비를 지원
 - 1999년부터 2003년 까지 2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지식경제부가 6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음³¹⁾
 - 사업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업단장이 과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형태로 운영([표 A-12] 참조)
 - 3단계³²⁾로 나누어 목표대비 달성도 등에 대하여 사업단별 평가 실시

31) 구 과학기술부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22개 사업단을 선정하였음. 2004년 10월에 구 과학기술부의 기능을 조정하면서 5개 사업단은 구 산업자원부, 1개 사업단은 구 정보통신부로 이관되었음. 2008년 2월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구 과학기술부가 주관한 사업단 16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구 산업자원부와 구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사업단 6개는 지식경제부로 이관되었음

32) 1단계(3년) + 2단계(3년) + 3단계(4년)이다.

[표 A-12]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단 현황

사업단	사업단장 소속기관	총 연구기간	주관부처
인간유전체기능연구	생명공학(연)	2000. 7 ~ 2010. 3	교과부
테라급나노소자개발	삼성중기원	2000. 7 ~ 2010. 3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	생명공학(연)	2000. 9 ~ 2010. 3	
자원재활용기술개발	지질자원(연)	2000. 7 ~ 2010. 3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	화학(연)	2001.10 ~ 2011. 3	
작물유전체기능연구	서울대	2001. 7 ~ 2011. 3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	전기(연)	2001. 9 ~ 2011. 3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건설기술(연)	2001. 8 ~ 2011. 3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	생명공학(연)	2002. 6 ~ 2012. 3	
세포응용연구	연세대	2002. 7 ~ 2012. 3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	KIST	2002.10 ~ 2012. 3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	기계(연)	2002. 7 ~ 2012. 3	
나노소재기술개발	KIST	2002.10 ~ 2012. 3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	에너지기술(연)	2002. 7 ~ 2012. 3	
뇌기능 활용 및 뇌질환 치료기술개발	서울대	2003. 9 ~ 2013. 3	
고효율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기술	에너지기술(연)	2003.10 ~ 2013. 3	
지능형마이크로시스템개발	KIST	1999.12 ~ 2010. 3	지경부
차세대소재성형기술개발	기계(연)	2001. 7 ~ 2011. 6	
스마트무인기기술개발	항공우주(연)	2002. 6 ~ 2012. 3	
차세대정보디스플레이기술	화학(연)	2002. 6 ~ 2012. 5	
인간기능생활지원지능로봇	KIST	2003.10 ~ 2013. 3	
유비쿼터스컴퓨팅	아주대	2003. 9 ~ 2012.12	

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 5~10년 후를 대비한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각 부처가 사업을 발굴하여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2003. 2. 25)와 참여정부 국정토론회(2003. 3. 7) 등에서 5~10년 후를 대비한 성장동력 창출 및 신산업 육성 필요성 제기
 - 2003년 7월에 민간전문가 회의를 통해 각 부처가 발굴한 품목을 중분류로 묶어서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
 - 2003년 8월 22일에 개최된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회」에서 12개 부처³³⁾가 공동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계획」을 발표
 - 2003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별 주관부처와 추진체계를 확정 ([표 A-13] 참조)

[표 A-1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과 주관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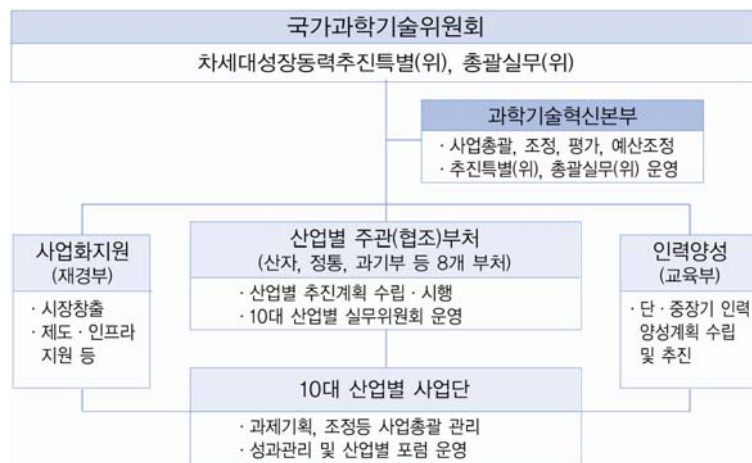
	주관부처	협조부처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구 정통부 구 산자부	구 과기부, 구 산자부 구 과기부
지능형로봇	구 산자부	구 과기부, 구 정통부
미래형자동차	구 산자부	구 과기부, 구 건교부
차세대반도체	구 산자부	구 과기부, 구 정통부
차세대이동통신	구 정통부	구 산자부
지능형홈네트워크	구 정통부	구 과기부, 구 산자부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구 정통부	구 과기부, 구 산자부, 구 문광부, 구 건교부, 구 해양부
차세대전지	구 산자부	구 과기부
바이오신약/장기	구 과기부	구 산자부, 구 농림부, 구 복지부

33) 구 재정경제부, 구 교육인적자원부, 구 과학기술부, 구 문화관광부, 구 농림부, 구 산업자원부, 구 정보통신부, 구 보건복지부, 환경부, 구 건설교통부, 구 해양수산부, 구 기획예산처 (12개)

- 정부·민간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
 - 정부는 기초·원천기술 개발과 초기시장 창출,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 간접지원에 중점
 - 민간은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

- 사업추진 부처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그림 A-4] 참조)
 - 부처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형성 단계, 핵심기술 등을 감안하여 산업별 주관부처를 선정
 - 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 총괄실무위원회, 산업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처간 이견을 조정
 - 구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평가·관리 업무를 총괄, 사업화 지원 정책은 구 재정경제부, 인력양성정책은 구 교육인적자원부가 담당
 - 사업단은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R&D 관리, 실용화, 인력양성 등을 총괄

[그림 A-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추진 체계



주: 당초 8개 부처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6년도에 구 건설교통부와 구 농림부의 사업이 종료되어 2007년도부터는 6개 부처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자료: 과학기술혁신본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08년 추진계획」, 2008. 2.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예산 규모는 2조 56억원임 ([표 A-14] 참조)
 - 기획 초기에는 5년간 3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2조원 규모로 축소되었음

[표 A-14]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억원)

	2004	2005	2006	2007	2008	합 계
당 초	3,717	5,001	6,121	7,066	8,719	30,624
조 정	3,252	3,671	4,373	4,329	4,431	20,056

자료: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2008.

- 산업분야별로 제품개발(End Product)과 직접 관련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투자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업화를 지원함³⁴⁾
 - 정부는 입지·시장창출·금융·세제·대외협력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결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민간은 상용화, 마케팅, 생산기반 구축 등 국내외 시장 확대
 - 입지: 대기업 수도권내 신·증설 허용(2005.11), 기업도시 선정시 가점 부여(2005.12) 등
 - 시장창출: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2005.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홈네트워크 시범사업(과주 운정지구) 등
 - 금융: 수급기업펀드 발행(중기청)시 참여기업에 우대 조치(2005년), 연구책임자와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기술포럼 개최(3회)
 - 세제: LCD 제조장비 등 10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연장(2005.12)
 - 대외협력: Wibro 해외 로드쇼 개최(남아공 등 5개국/2006), 세계표준 반영 지원

34) 과학기술혁신본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08년 추진계획」, 2008. 2.

- 10대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 및 제품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연구성과의 일부는 상용화에 성공하였음
 - 2007년까지 특허출원 8,087건(국내 6,395건, 국외 1,692건) 및 특허등록 2,335건(국내 2,165건, 국외 170건) 달성
 - 하이브리드 자동차, 지상파 DMB 송수신기, 디지털 액터, 512M PRAM 등 193개(제품)의 연구성과를 창출함
 - 연구성과의 상용화를 통하여 2007년까지 1조 1,320억원의 매출액 발생

마. 과거 유사사업과 신성장동력의 비교

- G7 프로젝트, 차세대성장동력과 신성장동력을 비교하면, 사업기간은 점차 단축되고, 투자규모는 증가하고 있음([표 A-15] 참조)
- 국내외 산업의 발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육성 대상 분야가 변화
 - 자동차(차세대자동차, 미래형자동차, 그린수송시스템)는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대상에 계속 포함되고 있음
 - 바이오(신약·신농약/의료공학, 바이오신약/장기, 바이오제약·의료기기)는 미래의 주력산업으로 육성대상에 계속 포함되고 있음
 - TV는 영상장치(수상기) 위주에서 방송통신융합산업으로, IT관련 기술은 유선통신에서 이동통신을 거쳐 IT융합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
 -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민간의 역량이 성숙한 분야는 육성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에는 에너지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가 다수 포함되었음
- 과거 사업들이 제품·기술과 관련된 R&D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성장동력은 서비스 산업도 대상으로 하며,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음

[표 A-15] G7,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의 비교

(단위: 억원)

	G7	차세대성장동력	신성장동력
기 간	1992~2001	2003~2008	2009~2012
투자규모	15,710	20,056	170,000
육성대상	신에너지기술 차세대원자로 차세대초전도토크막장치 환경공학기술 차세대자동차 고속전철 고선명TV 차세대 평판표시장치 광대역종합통신망(B-ISDN) 첨단생산시스템 정보전자에너지첨단소재 신기능생물소재 신의약·신농약 의료공학 차세대반도체 주문형반도체 초소형정밀기계 감성공학	미래형자동차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지능형로봇 바이오신약/장기 디지털컨텐츠/SW솔루션 차세대전지 차세대반도체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글로벌 헬스케어 콘텐츠·소프트웨어 고부가 식품산업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MICE·관광

주: 투자규모는 정부예산 기준이며, 2008년도까지의 집행액 및 2009년도 예산액, 2010년 이후 계획액의 합계임

3. 주요국의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 관련 정책

가. 미국

- 미국 경쟁력강화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2006) 수립
 - 경쟁력 우위지속 및 혁신창출을 위해 향후 10년간 지향하게 될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근간 수립 및 기업 친화적 기술혁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교육,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강조하며, 특히 물리과학과 공학(physical science & engineering) 분야의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3대 연방정부기관³⁵⁾의 연구 예산을 향후 10년간 (2007~2016) 2배로 확대할 계획
 - ACI 추진 관련 통합 법률제정(America COMPETES Act³⁶⁾, 2007. 8)
 - 세액공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 및 산학관 컨소시엄 세액공제 확대 등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10년간 세액공제규모 864억 달러 전망)
 - 기업기술개발지원 프로그램³⁷⁾을 기술혁신프로그램³⁸⁾으로 전환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2008년 1억 달러 → 2010년 1.4억 달러)하는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응용기술개발 지원정책 강화
 - 창의력 증강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직업교육시스템 개선을 통한 근로자 기술능력 향상, 세계 우수과학기술 인재영입을 위한 이민정책 개혁 등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및 확보에 주력

35) NSF(국립과학재단), DOE Office of Science(에너지부 과학국), NIST(국립표준기술원)

36) The America Creating Opportunities to Meaningfully Promote Excellence in Technology, Education, and Science Act

37)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래성이 있으나 기술 개발 위험이 큰 경쟁전 단계 기반기술을 중심으로 지원

38) TIP(Technology Innovation Program): 국가차원의 수요가 절실한 분야에 대한 고위험 연구 가속화를 위하여 혁명적인 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중소기업), 대학 및 컨소시엄을 지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녹색산업육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그린뉴딜 정책(Green New Deal)’ 발표(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2009. 1. 20)
 - 청정에너지, 그린카, 그린홈 등 녹색산업 육성에 향후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하여 500만개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목표 제시
 - 청정에너지 분야 기초연구와 핵심기술 상용화 관련 R&D 투자 확대를 위해 청정에너지 관련 연방정부 R&D예산 배증(60억 달러→120억 달러) 및 유망기술 상용화 등을 위한 ‘청정기술개발 벤처캐피탈 기금’ 조성
 - 2020년까지 CO₂ 10% 감축을 의무화하는 ‘저탄소 연료기준’을 설정하여 민간의 R&D 투자와 기술혁신 유도
 - 2020년까지 연방정부 소비전력의 30% 이상을, 2025년까지 미국 내 전력 소비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방침
 - 2015년까지 그린카, 그린홈, 스마트그리드 정책목표 제시([표 A-16] 참조)

[표 A-16] 미국의 그린카, 그린홈 및 스마트그리드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카: 2015년까지 하이브리드카, 바이오에탄올 차량 등 100만대 보급 ■ 그린홈: 매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갖춘 에너지고효율 주택 100만호 건설 ■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 IT를 통해 건물과 주택의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
--

주: 전력 IT: 아날로그 기기가 주종인 전력산업에 IT 기술을 접목하여 실시간 통신을 통해 운전, 제어 감시 등을 가능케 하는 지능화 기기 및 시스템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 「경기부양법(ARRA³⁹⁾)」 제정(2009. 2)
 - 경기부양에 7,890억 달러 투입 예정 → 일자리 창출, 과학기술과 교육을 통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의료비 인하, 중산층 지원 등 8개 분야로 구성 ([표 A-17] 참조)

39) ARRA: American Recovery & Reinvestment Act 2009

[표 A-17] 미국 「경기부양법」의 8개 지원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Clean, Efficient, American Energy) ■ 과학기술을 활용한 경제개혁 (Transforming our Economy with Science and Technology) ■ 도로, 교량, 운송, 운하의 현대화 (Modernizing Roads, Bridges, Transit and Waterways) ■ 21세기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the 21th Century) ■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세 (Tax Cuts to Make Work Pay and Create Jobs) ■ 의료비 인하(Lowering Healthcare Costs)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지원(Helping Workers Hurt by the Economy) ■ 공공분야 일자리 지키기 및 필수 서비스 보장 (Saving Public Sector Jobs and Protect Vital Services)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경기부양예산의 6.3%(494억 달러)를 교육과 과학기술에 투자하며, 경기부양예산의 2.7%(215억 달러)는 연방정부 R&D예산에 포함
- 2009년 연방정부 R&D예산은 1,511억 달러(전년대비 4.7% 증가)로 이 중에서 ARRA의 경기부양예산은 14.2%를 차지
- 기초연구, 생물의학 연구, 에너지 R&D, 기후변화 프로그램이 투자 우선 순위를 차지

나. 일본

- 2025년까지 혁신창조를 위한 정책로드맵(이노베이션 25) 수립(2007. 5)
 - 5대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시스템 개혁 및 기술혁신전략 제시하고, 8대 전략분야별 중점과학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표 A-18] 참조)
 - 이노베이션 추진본부(본부장 : 총리) 주관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

[표 A-18] 일본의 이노베이션 25의 5대 목표 및 8대 전략분야

5대 목표		평생 건강한 사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인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 세계적 이슈 해결에 공헌하는 사회 세계에 열린 사회
8대 전략분야	중점추진분야	생명과학, 정보통신, 환경, 나노·재료
	추진분야	에너지, 제조기술, 사회기반, 프론티어

자료: 박수동,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 수립(2008. 5)
 - ‘저탄소사회 만들기 행동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관한 중·장기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사회·경제적 시책 마련(2008. 6)
 - 혁신적 기술개발, 기존 선진 기술의 활용, 국가차원의 저탄소화 제도 도입, 지자체 및 대국민 홍보 강화 등
 - 지구온난화 대책 기술개발 사업의 일부(환경성, 38억엔), 혁신형 축전기 첨단과학 기초 연구 사업(경제산업성, 30억엔), 해양환경 주도권(국토교통성, 8억엔) 등 2009년도 과기예산 중 환경/에너지 기술 16% 증가 (1,408억엔 → 1,640억엔)
 - 2009년 1월 아소 다로 총리는 “2015년까지 녹색산업 시장규모를 100조엔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 일자리를 80만개 창출하겠다”고 발표
 - 녹색산업 투자에 대한 무이자 융자 등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하고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장려 등을 통해서 신수요를 창출하겠다는 복안
 - 종합과학기술회의(2009. 2)에서 환경에너지 기술혁신계획의 전략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로드맵 작성을 통해 향후 5년간 300억불 투입 계획

- 고유가,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대응한 ‘신경제성장전략’ 개정안 발표(2008. 9)
 - 경제산업성은 2006년 6월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인 ‘신경제성장전략’을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정
 -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집중 투자로 자원 고가시대와 저탄소사회의 승자가 되고, ‘고부가가치의 제품·서비스를 통한 글로벌화 지향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제시
 - ‘자원생산성 경제시대의 새로운 경제산업구조 구축’, ‘세계 시장획득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글로벌 전략’, ‘지역·중소기업·농업·서비스의 미래 지향 활성화’라는 3가지 추진안 제시
 - 글로벌 경기침체 대응 및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R&D를 통해 국가에너지 수급구조 개선과 녹색기술 R&D지원 및 녹색산업의 ‘신경제성장전략化’ 선언

- ‘강력한 기술’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계획(2009. 1)
 -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출자 형식으로 총 1조5,000억 엔(약 23조 원) 한도 내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함⁴⁰⁾
 - 공적자금은 ‘강력한 기술’을 보유하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3년내 수익 제고에 적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

- 2009년 과학기술정책 주요과제에서 변혁을 위한 과학기술 강조 (종합과학 기술회의, 2009. 2)([표 A-19] 참조)
 - ‘과학기술이야말로 일본이 살 길’이라는 인식에서, 장기 전망에 의한 과학 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진행
 - 환경·자원 제약의 돌파, 글로벌 세계에서 일본의 생존, 일본 사회의 구조적 위기 탈피를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강조

40) 경제산업장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민간은행이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매입하고 자본투입 손실이 일어났을 경우 정부가 정책투자은행을 통해 손실의 50~80%를 보증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힘

[표 A-19] 일본의 2009년 과학기술정책 주요과제

- 저탄소 사회 실현
- 건강 장수사회의 요구에 따른 의료산업 강화
- 인재 최대 활용사회의 실현
- 혁신적 기술개발의 기동적 추진
- 기초연구의 강화로 상식을 넘는 새로운 知的 발견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다. 중국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2006~2020) 수립(2006. 1)
 - 2020년까지 GDP 2.5% 수준(약 9,000억위안)의 연구개발비 투입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60% 이상 달성 추구
 - 과학기술분야 11개 및 중점 영역⁴¹⁾에 68개 연구과제를 선정
- 제11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7~2012) 수립(2006. 10)
 -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2006~2020)의 실천계획으로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과학기술발전이 핵심목표
 - GDP 대비 R&D 투자비중: 2006년 1.43% → 2012년: 2.00%
- 과학기술부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지원계획’ 제안(2009. 2)
 - ‘중대 과학기술 전문 프로젝트 및 구체 과학기술 연구 개발’을 위해 6건의 프로젝트에 6,000억 위안(약 882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
 - 중국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 강요’에서 확정된 16건의 중대 전문 프로젝트⁴²⁾ 중 6건의 전문 프로젝트를 선정 예정([표 A-20] 참조)

41) 에너지, 수자원 및 광물자원, 환경, 농업, 제조업, 교통운수업, 정보산업 및 현대 서비스 산업, 인구 및 건강, 도시화 및 도시발전, 공공안전, 국방

- 금융위기 대응으로 4조 위안 투자 계획(2009. 3)
 - 중국 정부 업무보고 중 금융위기 대응 및 발전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는 4조 위안(한화 약 826조원)의 투자 계획 발표
 - 투자 계획 시행기간은 2008년도 제 4분기부터 2010년까지이며, 중앙이 투자부분의 약 1조 1,800억 위안(한화 약 374조원) 부담

[표 A-20] 중국의 금융위기 대응 주요 투자분야

투자분야	투자규모
민생공정	4,000억 위안 (약 82.6조원)
농촌민생공정	3,700억 위안 (약 76.4조원)
기초설비건설	15,000억 위안 (약 301 조원)
사회사업	1,500억 위안 (약 30.1조원)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감축과 생태공정	2,100억 위안 (약 43조원)
구조조정과 기술개선	3,700억 위안 (약 76.4조원)
원촨(汶川) 대지진 복구재건	10,000억 위안 (약 206조원)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라. 유럽(EU)

- 제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07~'13) 수립 (부제 : 지식유럽 건설)
 - 지식기반 경제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
(2002~2006년: 175억 ECU → 2007~2013년: 670억ECU)
 -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분야 R&D예산을 집중함으로써 첨단분야의 과학기술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

42) 핵심전자 부품, 고급 통용 칩, 기초 소프트웨어, 초대형 집적회로 제조·관련기술, 차세대 광대역 무선이동 통신, 고급 디지털 선반 제조기술, 대형 유전/가스 개발, 대형 원자력 발전, 수질오염 제어·정비, 유전자변이 신제품 육성, 신약개발, 주요 전염병 예방(에이즈, 간염 등), 대형 비행기, 고해상도 대기관측 시스템, 유인 우주선, 달 탐사 공정

-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1차 경쟁력·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⁴³⁾(2007~2013) 수립
 -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연구개발과 혁신프로젝트를 지원하는 EU 최초의 정책수단으로, EU의 35만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년간 총 36억 유로 투입계획([표 A-21] 참조)

[표 A-21] EU의 경쟁력·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지원 계획

(단위: 억 유로)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대상
기업가 정신·혁신프로그램(EIP)	21.6	창업 및 혁신을 지원
정보통신정책 지원프로그램(ICT)	7.28	ICT 보급·활용을 지원
정보통신정책 지원프로그램(ICT)	7.27	에너지 활용·효율제고 지원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 에너지 전략기술(Strategic Energy Tech.) 계획 발표(2008. 1)
 - 유럽 전역에 걸친 저탄소기술 개발 촉진, 산업계의 에너지 관련 연구 강화 등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부흥계획(Economic Recovery Plan)’ 발표(2008. 11)
 - 소비촉진과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한 금융위기 타격 감소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제시
 - 고용지원, 고용수요 창출, 기업금융 접근성 강화, 그린상품의 급속한 확산 촉진, 자동차와 건설 산업 분야 청정기술개발 등을 포함
 - 경기부양을 위해 EU 총 GDP의 1.5%에 해당하는 2,000억 유로(2,590억 달러)를 향후 2년간(2009~2010) 투입할 예정이며, 경기부양예산의 6%를 청정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

43)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Framework Programme(CIP)

- 미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와 혁신, 교육에 투자 촉구
- 민간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 기금, 보조금 등 지원 확대 및 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유지
- 경제회복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녹색경제회복 (Green Economic Recovery)’ 개념 강조
- 유럽투자은행(EIB)은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및 인프라 구축에 연간 최대 60억 유로 투자 예정
- 최근 수요 감소와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심각한 도전을 맞고 있는 자동차와 건설 산업의 청정기술개발 지원 강화([표 A-22] 참조)

[표 A-22] EU의 청정기술 R&D 관련 주요 계획(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ropean green cars Initiative(자동차산업): 환경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기술에 대출 추진(50억 유로) ■ European energy-efficient building Initiative(건설산업): 에너지 사용과 CO₂ 배출 감소를 위해 신축 및 개축 건물에 대한 청정기술 사용, 에너지효율성이 높은 시스템과 자재 개발 촉진(10억 유로)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 선도시장계획(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 수립(2008. 1)

- EU집행위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조기에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6개 부문⁴⁴⁾을 선도시장(Lead Market)으로 선정하고, 육성전략 발표
- 집행위는 6개 선도시장 규모를 연간 매출액 1,200억 EURO, 고용 190만 명으로 추산, 2020년까지 시장규모 2배 이상, 신규 고용창출 100만 명으로 전망
- 법령 정비 및 규제환경 개선, 공공구매 확대, 표준화 및 인증제도 활용 등을 통한 초기 수요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전략으로 제시([표 A-23] 참조)

44) e헬스(e-Health), 산업용섬유(Technical textiles), 지속가능한 건설(sustainable construction), 바이오제품(Bio-based products), 자원재활용(Recycling),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표 A-23] EU의 6개 분야 육성전략

	육성전략
e-Health	보건·의료 부문에 정보통신기술(ICT) 적용을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 -전자 보건·의료 기록시스템(electronic health records) 개발, 원격의료 서비스(telemedicine services), 전자의료보험카드 도입 등)
산업용섬유	보호복용 섬유 등 개인 보호 의류·장비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용섬유 시장 확대를 위해 EU 차원의 기술규격 조화, 표준 설정, 공공구매 확대 등 추진
지속가능한 건설	EU 차원의 건축물 설계·시공·관리 규제 지침을 정비하고 에너지 및 환경 성과 목표(performance target) 설정 및 인증제도 운용 등 추진
바이오제품	환경·안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회원국 간 표준·라벨링·인증제도 조화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Green Public Procurement) 확대
자원재활용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기술 개발 촉진, 재활용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및 국제표준 개발 추진
재생에너지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확대하기 위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촉진 법령(Directive) 제정

자료: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참고자료 2] 신성장동력별 추진과제 현황

1. 신재생에너지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저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및 태양광 제조장비 국산화				
1-①	결정질 실리콘 기반으로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의 다각화 추진	R&D	2013	교과부 지경부
1-②	고효율·저비용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개발	R&D	2018	교과부 지경부
1-③	국산태양전지 보급 확대 및 제조장비 국산화	R&D	2011	지경부
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				
1-④	연료전지 부품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국내 고유모델 개발	R&D	2013	지경부
1-⑤	신개념 연료전지 및 수소제조기술 개발	R&D	2018	교과부 지경부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및 인프라 조성				
1-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보전을 위한 발전차액 지원	재정사업	2011	지경부
1-⑦	그린홈 보급 사업 추진	재정사업	2020	지경부
1-⑧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당제(RPS) 도입	제도개선	2012	지경부
1-⑨	신재생에너지 성장동력화를 위한 인력양성 추진	인력양성	2018	지경부
해양바이오 원료 대량양식기술 개발, 실증 플랜트 건설				
1-⑩	세계 최초 해조류 바이오에탄올 파일럿 플랜트 건설	R&D	2012	지경부
1-⑪	해양생물 이용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사업	R&D	2018	국토부
1-⑫	해조류 바이오매스 양산 및 통합적 활용기술	R&D	2021	농식품부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10년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 등 해양에너지 보급 확대				
1-⑬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R&D	2013	국토부 (지경부)
1-⑭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국토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원료한계 극복				
1-⑮	저급탄의 친환경 석탄가스화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1-⑯	합성가스 정제 및 활용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폐기물에너지 상용화 기술개발				
1-⑰	미래 주도형 폐자원에너지의 기초 및 상용화 기술 확보	R&D	2013	환경부 지경부
1-⑱	바이오매스 활용 융합기술	R&D	2018	교과부 (환경부)
1-⑲	폐자원에너지 분야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환경부 (교과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⑧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법률	지경부	개정	2012	RPS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자료: 지식경제부, 2009. 8.

2. 탄소저감에너지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국산화				
2-①	10MW급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개발	R&D	2013	지경부 교과부
2-②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개발	R&D	2015	지경부 국토부 교과부
2-③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교과부
원전플랜트 수출 추진				
2-④	미자립 핵심기술 조기 국산화	R&D	2012	지경부
2-⑤	우리 고유 신형 상용원전(APR+) 조기 개발	R&D	2012	지경부
2-⑥	원전도입 기반구축 협력 추진	기타 (국제협력)	2013	지경부
2-⑦	SMART 표준설계 및 인허가 획득	R&D	2011	교과부
2-⑧	수출맞춤형 연구로 기술개발	R&D	2013	교과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3. 고도 물처리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상수 관리 최적화 및 선진화				
3-①	막여과 시스템 응용기술 개발	R&D	2013	환경부
3-②	수도관망 관리 기술 고도화	R&D	2013	환경부
3-③	수도기자재 위생안전인증제도 도입	제도개선	2013	환경부
3-④	먹는샘물 품질인증제도 도입	제도개선	2013	환경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3-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기술 고도화	R&D	2011	환경부
3-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2010	환경부
3-⑦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보급 확대	재정사업	2013	환경부
해수 이용 기술 고도화				
3-⑧	해수담수화플랜트 기술 고도화	R&D	2013	국토부 (환경부)
3-⑨	증기 압축 시스템 이용 담수화 기술 개발	R&D	2010	지경부
3-⑩	해양심층 수자원 이용기술 개발	R&D	2013	국토부
수자원 관리·복원 기술 개발				
3-⑪	통합 수자원관리 기술 개발	R&D	2013	교과부 (국토부)
3-⑫	수생태계 복원기술 개발	R&D	2014	환경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3-⑬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인력양성	2013	환경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3-③	수도법	법률	환경부	개정	2009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근거조항 신설
3-⑤ 3-⑦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환경부	제정	2009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령 제정

자료: 환경부, 2009. 8.

4. LED 응용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LED 응용분야 시장수요 창출				
4-①	고효율 LED조명 보급 확대	재정사업	2012	지경부
4-②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조명 반영	기타 (계획반영)	2009	국토부 (지경부)
4-③	농어민 LED보급 지원	재정사업	2013	농식품부 (지경부)
LED 핵심역량 제고				
4-④	LED 핵심기술개발 투자	R&D	2013	지경부
4-⑤	LED 국내외 홍보강화	재정사업	2010	지경부
LED 성장기반 구축				
4-⑥	LED특화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2012	지경부
4-⑦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2010	지경부 (국토부)
4-⑧	LED 제품별 규격 제정 및 고효율 기자재 인증 기준 마련	재정사업	2012	지경부 기표원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4-②	신도시 건설계획에 LED 조명 반영	계획 수립	국토부	계획 반영	2009	신도시 실시계획 수립시 LED 사용가능분야 발굴하여 계획 반영 - 현재, 공원등, 교통표지등, 가로등 등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분야는 기시행중
4-⑦	LED 관련 건축설비 등 법 제도 개선	고시	국토부	개정	2010	LED 보급확대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개정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	훈령 (총리령)	지경부	개정	2009	공공기관 건물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의무화” 및 백열전구 퇴출(‘09까지), LED 교체비율·시한 설정(‘12년까지 30%를 LED조명기기로 교체)

자료: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 2009. 8.

5. 그린수송시스템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그린카 핵심기술 조기확보				
5-①	16/32/64km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PHEV) 개발	R&D	2013	지경부
5-②	EURO 6 및 CO2 배출규제 대응 클린디젤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환경부)
5-③	그린카 공통 핵심 원천기술부품 개발	R&D	2013	지경부
5-④	온라인 전기자동차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R&D	2010	교과부
그린카 수출경쟁력 강화				
5-⑤	그린카 부품 육성을 위한 그린 네트워크 구축	재정사업 (시범사업)	2013	지경부
5-⑥	그린카 부품 검증·평가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5-⑦	그린카 실증사업 기반 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국토부)
WISE-Ship 핵심기술 조기확보				
5-⑧	미래형 친환경 선박 핵심요소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5-⑨	Extreme Ocean Plant 핵심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5-⑩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	R&D	2010	교과부
WISE-Ship 수출경쟁력 강화				
5-⑪	공통핵심 연구설비 기반 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5-⑫	레저선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제도개선	2013	지경부
첨단철도 핵심기술 조기확보				
5-⑬	차세대 고속철도 개발	R&D	2013	국토부
5-⑭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R&D	2012	국토부
5-⑮	청정열차 기술개발	R&D	2013	국토부
5-⑯	기술자립형 도시철도시스템 기술개발	R&D	2014	국토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5-⑫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해양경찰청	개정	2010	수상레저산업활성화를 위한 수상레저기구 및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총리실과 공동추진)

자료: 지식경제부, 2009. 8.

6. 첨단그린도시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한국형 U-City 모델창출				
6-①	U-City 종합계획 수립	기타 (계획수립)	2009	국토부
6-②	U-City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국토부
6-③	U-City 핵심기술 개발·보급	R&D	2012	국토부 (지경부)
6-④	U-City 시범사업 추진	재정사업 (시범사업)	2013	국토부
ITS 인프라 조기 구축 및 수출기반 강화				
6-⑤	지능형교통체계(ITS) 차세대 핵심기술개발	R&D	2013	국토부 (지경부)
6-⑥	ITS 인프라서비스 구축 확대	재정사업	2013	국토부
6-⑦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 개정	제도개선	2010	국토부
공간정보기술의 국제시장점유율 확대				
6-⑧	지능형 국토정보기술 혁신사업	R&D	2011	국토부 (지경부)
6-⑨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2010	국토부
6-⑩	공간정보산업 인력양성	인력양성	2013	국토부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보급활성화				
6-⑪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연구 개발	R&D	2011	국토부
6-⑫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시범사업 추진	기타 (민간투자)	2012	국토부
6-⑬	주택 성능등급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제도개선	2009	국토부
6-⑭	미래 친환경 건설산업 인력양성	인력양성	2013	국토부
브랜드화를 통한 해외수출				
6-⑮	첨단그린도시 해외진출방안 마련	재정사업	2013	국토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6-①	U-City종합계획	법정 계획	국토부	신규 수립	2009	U-City의 이념과 기본 방향, 국가차원의 추진 체계와 전략을 포함 하는 종합계획 신규수립
6-⑦	교통체계 효율화법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ITS 및 복합환승센터 관련법령개정 ITS기본계획, 지방계획 수립 ITS 표준·품질인증 제도 도입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구축 등
		시행령	국토부	개정	2009	
		규칙	국토부	개정	2009	
6-⑨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공간정보 관련 법령 제·개정 공간정보 산업진흥 기본계획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6-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국토부	개정	2009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에너지성능등급 의무 표시 대상 확대(500 세대→300세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고시	국토부	개정	2009	

자료: 국토해양부, 2009. 8.

7. 방송통신융합산업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신규서비스 및 투자 활성화				
7-①	IPTV등 방송통신융합산업 수요창출	재정사업	2013	방통위
7-②	방송통신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재정사업	2013	방통위
7-③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 및 제도개선	제도개선	2013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산업 성장인프라 강화				
7-④	차세대 미디어 성장기반 강화	재정사업	2013	방통위
7-⑤	방송통신망 기반 구축	재정사업	2013	방통위
7-⑥	방송의 디지털전환 체계적 추진	재정사업	2012	방통위
7-⑦	디지털방송콘텐츠 제작기반 강화	재정사업	2012	방통위 문화부
7-⑧	미래지향적 방송통신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방통위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				
7-⑨	방송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	R&D	2013	방통위 지경부
7-⑩	차세대네트워크산업 원천기술개발	R&D	2013	방통위 지경부
7-⑪	방송통신 녹색성장 기술개발 및 확산	R&D	2013	방통위
7-⑫	방송통신융합 정보보호기술 개발	R&D	2013	방통위 지경부
7-⑬	국제 표준개발 및 표준화활동 강화	재정사업	2013	방통위 지경부
7-⑭	핵심 장비부품 기술개발 및 지원	R&D	2013	방통위 지경부
글로벌 해외시장 개척				
7-⑮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방통위 지경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7-③	방송법	법률	방통위	개정	2009~ 2010	유료방송 의무편성채널 규정 개선 및 방송 분쟁조정대상 확대 등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법률	방통위	제정	2009~ 2010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기본적인 사항을 통합 하고, 방송통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방송통신사업법	법률	방통위	제정	2011	방송통신에 대해 수평적 규제를 적용하여 단일 사업법으로 정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시행령	기재부	개정	2009	‘방송업’을 ‘지식기반 산업’에 포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09. 8.

8. IT융합시스템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IT융합 1등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원천 및 상용화 기술개발				
8-①	IT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8-②	IT융합 신산업 핵심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8-③	RFID/USN 핵심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8-④	차세대 반도체 산업화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8-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화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8-⑥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R&D	2013	지경부
IT융합 인프라 확충 및 고급인력 양성				
8-⑦	IT융합 인프라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8-⑧	IT융합시스템 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지경부
IT융합확산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법제도 개선				
8-⑨	RFID/USN 검증·확산사업	재정사업 (시범사업 등)	2013	지경부
8-⑩	IT융합시스템 관련 법제도 개선	제도개선	2013	지경부 (국토/조달청)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8-⑩	항만법	법률	국토부	개정	2009	항만컨테이너에 대한 RFID부착의무화

자료: 국토해양부, 2009. 8.

9. 로봇 응용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장확대형) 제조용·에듀테인먼트 로봇수요 확산				
9-①	대규모 로봇수요공간 조성	재정사업	2014	지경부
9-②	수요창출을 위한 로봇보급·확산	재정사업	2018	지경부
9-③	체계적인 로봇산업진흥·지원시스템 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신시장창출형) 사회안전·의료 로봇융합시장·기술의 동반성장				
9-④	신성장동력 양산라인 자동화 설비 개발	R&D	2013	지경부
9-⑤	로봇산업 기반기술 및 사업화 기술개발	R&D	2013	지경부
9-⑥	로봇융합산업 및 로봇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	재정사업	2013	지경부
9-⑦	국제표준화 및 품질인증제도 마련	재정사업	2013	지경부
(기술선도형) 세계 서비스로봇 기술 선도				
9-⑧	생활서비스로봇 핵심원천기술개발	R&D	2013	지경부/ 교과부
9-⑨	세계 프로젝트 리더급 로봇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지경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10. 신소재·나노융합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역량 확보				
10-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리딩(GL) 신소재 개발	R&D	2018	지경부
10-②	나노기술 상용화를 위한 「나노융합 2.0」 프로젝트 추진	R&D	2018	지경부 교과부
10-③	신소재·나노 원천기술개발 및 개발소재 시장창출	R&D	2018	교과부 지경부
산업발전 추진주체 및 기반 확보				
10-④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원 인프라 구축	재정사업	2010	지경부
10-⑤	신소재·나노융합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8	지경부 교과부
10-⑥	신소재·나노융합 표준화 추진체계 구축	재정사업	2013	지경부
10-⑦	국제협력을 통한 인력 및 기술기반확보 촉진	재정사업	2018	지경부 교과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11. 바이오제약·의료기기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바이오의약품 개발				
11-①	항체치료제,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개발	R&D	2016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11-②	바이오시밀러 제품화 및 세계진출 지원	R&D	2011	지경부
11-③	바이오전문 아웃소싱서비스(CRO·CMO) 활성화	재정사업	2013	지경부
11-④	생물의약품·의료기기 비임상·임상시험 기반 구축	재정사업	2013	복지부 지경부
11-⑤	생물의약품·의료기기 제조시설 지원(용자)	재정사업	2012	복지부
첨단의료기기 개발				
11-⑥	메디-바이오진단시스템 개발	R&D	2015	지경부 교과부 복지부
11-⑦	첨단의료영상진단기기 개발	R&D	2013	지경부 교과부
11-⑧	고령친화의료기기 개발	R&D	2013	지경부 복지부
11-⑨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아이디어 실현화	재정사업	2013	복지부
11-⑩	IT융합기반의 디지털병원 수출	재정사업	2013	지경부 (복지부)
바이오자원 개발				
11-⑪	바이오 자원·신소재·장기 개발	R&D	2013	농진청 교과부
11-⑫	바이오자원기반 친환경 바이오화학제품 개발	R&D	2013	지경부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제도 선진화				
11-⑬	바이오메디컬전문펀드 조성 및 투자	재정사업	2012	지경부
11-⑭	제도 선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기반구축	제도개선	2012	복지부 농진청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12. 고부가 식품산업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고부가 식품 전략품목 개발				
12-①	고부가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원천·응용기술 개발	R&D	2013	농식품부
12-②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현대화	재정사업	2013	농식품부
12-③	천일염 세계 명품화 전략	제도개선	2013	농식품부
식품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 인프라 조성				
12-④	고부가 식품생산을 위한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2013	농식품부
12-⑤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재정사업	2013	농식품부
12-⑥	유기가공식품산업 생산기반 확충	재정사업	2012	농식품부
대내외 수요 창출 확대				
12-⑦	한식 산업화·세계화 지원	재정사업	2013	농식품부 (농진청)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2-③	염관리법	법률	농식품부	개정	2009	「소금산업법」으로 전부 개정, 소금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조항 신설
12-④	식품산업진흥법	법률	농식품부	개정	2009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근거조항 신설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9. 8.

13. 글로벌 헬스케어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병원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13-①	의료기관 자본조달경로 다양화를 위한 제도정비	제도개선	-	복지부
외국인환자의 인지도와 접근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3-②	의료기관 국가인증제의 단계적 도입	제도개선	2013	복지부
13-③	한국의료 마케팅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채널 확대	제도개선	2013	복지부 (문화부)
13-④	의료목적 비자제도 개선	제도개선	2009	법무부
13-⑤	해외환자 유치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2013	복지부
13-⑥	해외환자 의료분쟁 대응제도 구축	제도개선	2009	복지부
의료분야 R&D 확충				
13-⑦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 육성	재정사업	2013	복지부
u-Health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				
13-⑧	u-Health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2009	복지부
13-⑨	u-Health 활성화 기반 조성	제도개선	2013	복지부 (지경부)
13-⑩	u-Health 시스템 및 서비스 개발	R&D	2013	복지부 (지경부)
13-⑪	u-Health를 활용한 해외의료서비스 진출	제도개선	2013	복지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3-②	의료법	법률	복지부	개정	2010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 근거 마련
13-⑤				개정	2009	등록 취소 요건 추가
13-⑩				개정	2009	원격진료 허용범위 및 대상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 8.

14. 글로벌 교육서비스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우수 외국교육기관 및 유학생 유치				
14-①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제도개선	2013	교과부
14-②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재정사업	2013	교과부
U-러닝 기반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14-③	U-러닝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제도개선	2013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노동부)
14-④	U-러닝 시범사업 실시 및 인식 확산	재정사업 (시범사업 등)	2013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복지부 노동부)
14-⑤	U-러닝 핵심기술 및 콘텐츠 개발	R&D	2013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14-⑥	U-러닝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교과부 지경부 (문화부)
교육과정·정보화·인력 해외진출 확대				
14-⑦	교육과정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교과부
14-⑧	교육정보화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교과부 지경부
14-⑨	교육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교과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4-③	이러닝산업발전법	법률	지경부	개정	2010	이러닝의 교육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지경부, 교과부 공동 개정)

자료: 지식경제부, 2009. 8.

15. 녹색금융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배출권시장 활성화				
15-①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재정사업 (시범사업)		녹색위 (재정부/ 지정부/ 환경부/ 금융위)
15-②	배출권 거래소 설립	제도개선	2012	녹색위 (재정부/ 환경부/ 지정부/ 금융위)
녹색산업 금융지원				
15-③	녹색기업 여신우대 유도	제도개선		금융위 (환경부/ 지정부)
15-④	자본시장을 통한 녹색산업 투자활성화	제도개선		금융위 (재정부/ 지정부/ 환경부)
15-⑤	녹색산업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제도개선	2009	재정부 (금융위)
15-⑥	녹색금융상품 보급 활성화	기타		금융위 (환경부/ 지정부)
녹색금융 인프라 조성				
15-⑦	금융권 녹색금융 인식 확산	기타	2009	금융위
15-⑧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금융위 (환경부/ 지정부)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15-⑨	녹색기업 인증제도	제도개선	2013	환경부/ 지경부/ 금융위
15-⑩	녹색금융지원 환경정보 DB구축	채정사업	2013	환경부 (금융위/ 지경부)
15-⑪	금융투자업 육성	제도개선		금융위 (노동부)
15-⑫	금융투자업 해외진출을 위한 원스톱 종합 지원센터 구축	기타	2013	금융위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5-① 15-② 15-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법률	총리실 (녹색위)	제정	2009	배출권거래제 도입 근거 등 신설 녹색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자료: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 2009. 8.

16. 콘텐츠·소프트웨어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콘텐츠산업 창작기반 확충				
16-①	핵심 CT 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R&D	2013	문화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16-②	융합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문화부 (교과부)
16-③	방송영상콘텐츠 투자활성화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6-④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6-⑤	저작권 보호 강화	재정사업	2013	문화부
글로벌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16-⑥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재정사업	2012	문화부 (지경부)
16-⑦	킬러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6-⑧	콘텐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보증 및 융자 지원	제도개선	2011	문화부 (금융위)
융합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기반 조성				
16-⑨	주력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SW융합 기술 개발	R&D	2013	지경부
16-⑩	주력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SW융합기술 상용화 지원	R&D	2013	지경부
16-⑪	지역별로 특화된 SW융합 제품 개발	재정사업	2013	지경부
16-⑫	SW 품질제고를 위한 SW공학의 산업현장 적용 지원	재정사업	2013	지경부
16-⑬	SW융합 전문인력 양성	인력양성	2013	지경부
SW기업 해외진출 지원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16-⑭	대·중소 SW기업간 수출멘토링 확대	채정사업	2013	지경부
16-⑮	IT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	채정사업	2013	지경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 제도개선 대상

관리 번호	개선대상	종류	소관	개선 방법	예정 시기	개선할 내용
16-⑤	저작권법	법률	문화부	개정	2010	비영리 목적의 저작물 단순 이용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개정(공정 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9. 8.

17. MICE · 관광

□ 추진과제

관리 번호	과제명	정책수단	완료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총체적인 MICE 유치 활성화 여건 조성				
17-①	MICE 통합지원체계 구축	재정사업	2010	문화부 (총리실/ 지경부)
17-②	MICE 참가자 비자절차 간소화	제도개선	2010	법무부/ 외교부 (문화부/ 지경부)
17-③	MICE 연계 패키지 상품 개발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7-④	MICE 시설 확충 및 집적화	제도개선	2012	문화부/ 지경부 (교과부)
17-⑤	세계적인 수준의 MICE 유치 및 육성	재정사업	2012	문화부/ 지경부
생태·공연·쇼핑 등이 연계된 융합관광 활성화				
17-⑥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관광자원 육성	재정사업	2013	문화부/ 환경부
17-⑦	생태관광 인증제 등 제도적 기반 조성	제도개선	2013	문화부/ 환경부
17-⑧	전용공연장 구축 및 공연관광 클러스터 조성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7-⑨	세계적 수준의 공연관광 축제 개최	재정사업	2013	문화부
17-⑩	공연사업체 육성	재정사업	2013	문화부 중기청
17-⑪	명품아울렛 관광지화 및 쇼핑인증제 도입	제도개선	2013	문화부
17-⑫	남해안 및 섬관광 활성화	제도개선	2009	문화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자료: 국무총리실 등,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참 고 문 헌

- 구 과학기술부, 「선도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설정 및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 2001. 12.
- 구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현황 및 '08년 추진계획」, 제13회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단장 간담회 발표 자료, 2008. 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2008. 8.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 2009. 1.
-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2009. 5.
-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2009. 5.
- 관계부처 합동, 「신성장동력 종합 추진계획(요약)」, 2009. 5.
- 관계부처합동, 「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 -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제3차 민·관합동회의 회의자료, 2009. 7. 2.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총람」, 2009. 2.
- 국무총리실·교육과학기술부, 「신재생에너지, 글로벌헬스케어 등 미래 한국을 이끌 17개 신성장동력 선정」, 보도자료, 2009. 1.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신성장동력 세부 추진계획」, 2009. 5.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산림청,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08. 9.

국무총리실,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성과 향상을 위한 2009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 계획」, 2009. 3.

국토해양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 2009년 업무보고, 2008. 12.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2009. 6.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09. 4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기후변화대책 및 녹색성장 관련 제정법률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2009. 4.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특별보고, 200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무총리실·소방방재청·산림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New Deal 사업'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자료, 2009. 1.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국토해양부·방송통신위원회,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 5.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 2009. 7.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2009. 7.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 요약본, 2009. 7.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 -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블루오션 전략」,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008. 2.

대한민국정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2009. 9.

박수동,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및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안승구, 「주요 경쟁국의 경제위기 대응 및 성장동력 육성정책 동향」, 국회예산정책처 전문가간담회 발표자료, 2009. 5.

중소기업청, 「신성장동력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 2009. 5.

지식경제부,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2009. 4.

BSA·IDC, 「2008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Global Software Piracy Study)」, 2009. 5.

작성자 명단

부 문	성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 · 조정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박인화 예산분석심의관	
	조영철 산업예산분석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고 작성 I. 총론 및 요약 II.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III.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성공을 위한 과제 IV. 신성장동력 분야별 예산 및 입법 과제 V. 결 론 	전용수 예산분석관	
	전용수 예산분석관	
	전용수 예산분석관	
	전용수 예산분석관	
	유인규 예산분석관	
	강상규 예산분석관	
	김성은 예산분석관	
	변재연 예산분석관	
	이형진 예산분석관	
	한정수 예산분석관보	
	전용수 예산분석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정리 및 편집 	박미현 사무보조원
		이재량 예산정책 조사분석지원인턴

2009년 예산정책보고서 발간 현황 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일자리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사회예산분석팀	2009. 2. 26
2	일본의 지역 중심 고용대책 사례와 시사점	박인화 김봉주 서세욱 조혜정	2009. 4. 21
3	재정법률 개선과제	예산분석실	2009. 6. 10
4	중소기업 지원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이화실 유인규 정상훈 전승훈 이진우 윤성식	2009. 9. 22
5	「국회예산정책처 2008회계연도 결산분석」 에 대한 「소관부처 의견」 검토	예산분석실	2009. 9. 23
6	2009년도 국가재정운용 점검보고서	예산분석실	2009. 10. 5
7	2010년도 예산안 분석 가이드라인	예산분석실	2009. 10. 16

전용수	유인규	강상규	김성은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경제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사회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02-788-4628	02-788-4623	02-788-4635	02-788-4634
yongsu@nabo.go.kr	jayoo@assembly.go.kr	skang@nabo.go.kr	sekim06@nabo.go.kr

변재연	이형진	한정수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산업예산분석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	예산분석관보
02-788-4630	02-788-4636	02-788-4632
onokoro@na.go.kr	kirode@assembly.go.kr	water@nabo.go.kr

[2009 예산정책보고서 제8호] 신성장동력 육성 정책: 예산과 입법과제

발 간 일	2009년 10월 20일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팀
발 행 인	신 해 룡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2070·3114
인 쇄 처	성지문화사 (TEL 02·2273·5090)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ISBN 978-89-6073-245-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09